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발표논문집

한 국 지 역 사 회 복 지 학 회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임원명단

(2011. 7 - 2013. 6)

## ◆ 회 장

박태영(대구대 교수)

## ◆ 부 회 장

김성천(중앙대 교수)

최현숙(상지대 교수)

배윤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 이 사

감정기(경남대 교수)

김광빈(동명아동복지센터장)

김대원(대전대 교수)

김범수(GDI 다문화연구소장)

김숙경(초당대 교수)

김승용(백석대 교수)

김진이(백석대 교수)

김창기(한국교통대 교수)

김한양(대구사이버대 교수)

김현진(청주대 교수)

남현주(경원대 교수)

류만희(상지대 교수)

모선희(공주대 교수)

문영희(서울기독대 교수)

박영준(대구대 교수)

박용순(성결대 교수)

박윤영(성결대 교수)

박정란(인제대 교수)

박창우(관동대 교수)

배진희(예수대 교수)

서혜석(예수대 교수)

성명옥(신문대 교수)

손광훈(경성대 교수)

손덕순(용인송담대 교수)

손정일(대구미래대 교수)

송인옥(대구사이버대 교수)

신민정(수성대 교수)

신현석(경남정보대 교수)

양혜진(대전대 교수)

엄기옥(군산대 교수)

오정수(충남대 교수)

유용식(세명대 교수)

이경은(경북대 교수)

이근홍(협성대 교수)

이병록(건양대 교수)

이봉재(서울신학대 교수)

이서영(서울사이버대 교수)

이석형(영남신학대 교수)

이윤화(목원대 교수)

이재모(영남대 교수)

이재완(공주대 교수)

이재희(경북외국어대 교수)

이채식(우송정보대 교수)

장영인(한라대 교수)

전영록(제주관광대 교수)

정명숙(백석예술대 교수)

정무성(송실대 교수)

정성일(안동과학대 교수)

정종우(성공회대 교수)

정종화(삼육대 교수)

제미순(거제대 교수)

조미경(광주대 교수)

조영진(경상북도의회 전문위원)

조추용(꽃동네대 교수)

지은구(계명대 교수)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최선화(신라대 교수)

최유미(부산디지털대 교수)

최종혁(강남대 교수)

최태자(코리아토탈케어서비스대표)

함철호(광주대 교수)

홍연숙(제주한라대 교수)

\* 가나다 순

◆ 감 사

남진열(제주대 교수)

조성숙(계명대 교수)

◆ 고 문

김영모  
최일섭  
송정부

이영철  
표갑수  
전광현

◆ 분과위원

(총무분과)

박영준(대구대 교수)  
류애정(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전문위원)  
배진희(예수대 교수)

이채식(우송정보대 교수)  
전영록(제주관광대 교수)  
최유미(부산디지털대 교수)

(편집분과)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김현진(청주대 교수)  
박창우(관동대 교수)

서해석(예수대 교수)  
이봉재(서울신학대 교수)  
이서영(서울사이버대 교수)

(학술분과)

이재완(공주대 교수)  
남현주(경원대 교수)  
송인옥(대구사이버대 교수)  
안혜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엄기옥(군산대 교수)  
전선영(용인대 교수)  
정종우(성공회대 교수)

(정책분과)

김승용(백석대 교수)  
김상곤(안산대 교수)  
김숙경(초당대 교수)

박진필(신당복지관 관장)  
양혜진(대전대 교수)  
이경은(경북대 교수)

(국제협력분과)

최태자(코리아토탈케어서비스대표)  
김주일(서울시립대 교수)  
유성호(선문대 교수)

이원식(금강대 교수)  
조미경(광주대 교수)

(산학협동분과)

황용규(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영규(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배기효(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유필우(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방철호(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상도(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장광수(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원영(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주선(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창기(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수진(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차종선(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정시채(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진우(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이승창(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이동한(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 사무국장

김동화(경북행복재단)

(밑줄 친 부분은 분과위원장임)

## 일 정

- 일 시 : 2013 5월 31일(금) 10:30 ~ 18:00
- 장 소 : 상지대학교 본관5층 대회의실

[ 2013년 5월 31일 ]

---

### • 10 : 30 - 12 : 30 자유주제 발표

---

#### 제1분과

좌장 : 이재완(공주대 교수)

##### ➤ 발표 1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자 : 정성기(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근홍(강남대 교수)

토론자 :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연구원)

##### ➤ 발표 2 지역사회재활모형으로서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발표자 : 이달엽(대구대 교수), 박미량(대구대 대학원 석사)

토론자 : 임종호(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발표 3 자활사업 참여자의 협동조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o'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표자 : 황상섭(성공회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 심상용(상지대 교수)

#### 제2분과

좌장 : 박영준(대구대 교수)

##### ➤ 발표 1 : 인정과 보상이 노인자원봉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금룡(상명대 교수), 박상옥(상명대 복지상담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강사),

유은경(상명대 복지상담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강사)

토론자 : 김승용(백석대 교수)

##### ➤발표 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발표자 : 김재녀(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이형하(광주여대 교수)

토론자 :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

### 12:30 - 13:30 점심식사

---

---

---

13:30 - 14:00 개회식

---

---

사회 : 박영준(대구대 교수)

---

---

14:00 - 17:10 기획주제발표

---

---

좌장 : 전광현(서울신학대 교수)

▶ 발표 1 :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발표자 : 류만희(상지대 교수)

토론자 : 이강익(강원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본부장)

토론자 : 용정순(원주시의회 의원)

좌장 : 김형방(상지대 교수)

▶ 발표 2 :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발표자 : 이은애(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토론자 : 이용재(호서대 교수)

토론자 :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 발표 3 :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발표자 : 김선기(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자 : 우영균(상지대 교수/ 산학협력단장)

토론자 : 최명진(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

17:10 - 18:00 종합토론

---

---

사회: 박태영(대구대 교수)

○ 폐 회 (18:00- )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Contents

### 『 기획주제 발표 』

#### ◆ 기획주제 발표 1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 1

발표자 : 류 만 희 (상지대 교수)

토론자 : 이 강 익 (강원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본부장)

용 정 순 (원주시의회 의원)

#### ◆ 기획주제발표 2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 31

발표자 : 이 은 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토론자 : 이 용 재 (호서대 교수)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 ◆ 기획주제 발표 3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 61

발표자 : 김 선 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자 : 우 영 균 (상지대 교수 / 산학협력단장)

최 명 진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 자유주제 발표 』

### ◆ 제 1 분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 83

발표자 : 정 성 기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 근 홍 (강남대 교수)

지역사회재활모형으로서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 86

발표자 : 이 달 엽 (대구대 교수)

박 미 량 (대구대 대학원 석사)

자활사업 참여자의 협동조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o’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95

발표자 : 황 상 섭(성공회대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강북지역자활센터)

### ◆ 제 2분과

인정과 보상이 노인자원봉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주도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98

발표자 : 이 금 룡 (상명대 교수)

박 상 옥 (상명대 강사)

유 은 경 (상명대 강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 101

발표자 : 김 재 녀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이 형 하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기획주제 발표 1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류 만 희 (상지대 교수)



# 지역복지실천전략과 사회적경제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 차

1. 문제제기
2.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전략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복지
4. 사회적 기업의 상황
5.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협동조합
6. 결론

## 1. 문제제기 (1)

01

-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연구 및 실천영역**
- **사회복지학의 성격 및 특성**
  - 실천학문
  - 분야별로 명확한 대상,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독립된 법률을 갖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의 한계**
  - 대상과 실천전략, 법률적 기반이 다소 모호한 측면을 내포
  - 한계점 보완을 위한 연구방향: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 **지역사회복지 정체성 논의 전개**
  - 의미: 실천적으로 기반을 견고히 한다는 차원
  - 한계: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실천 전략, 기술에 대한 논의 부족

## 1. 문제제기 (2)

02

- **연구의 목적**
  -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영역과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봄
- **연구의 필요성**
  -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간성, 동질성, 이해관계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인 영역
- **사회적 경제란?**
  -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안정적, 체계적, 역동적인 활동전개 예상가능
- **각 법률에서 명시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지역에서 활동 의미**
  - 지역사회개발모델, 지역사회조직화 모델, 지역사회행위 모델의 종합적인 구현
- **연구내용**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전략 논의
  - 지역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관계성과 유의미성 제언

## 2. 지역사회복지와 실천전략 (1)

03

### 1)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 [최일섭, 류진석, 1996; 최일섭, 이연주, 2006].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생활문제를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함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활용·개발하여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 [박태영, 2006]

“지역사회를 접근단위로 하여 그 구성원들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 [김정기·백종만·김찬우, 2005]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이하 [최일섭 외 1996; 2006과 동일]” [오정수·류진석 2004]

“지역주민이나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려는 모든 노력” [지은구·조성숙, 2010]

## 2. 지역사회복지와 실천전략 (2)

04

### ▪ 국내 학자들의 지역사회복지개념 정의의 함의(공통점)

- 동일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역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일체의 사회적 노력으로 귀결
- 전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서비스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원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역할

### 2)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전략

- 국내의 독립적인 실천전략 보다는 외국학자들의 방법론을 제시
  - Rothman, Taylor and Roberts, Well and Gamble, Popple 등이 대표적
- Rothman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주요한 실천모델로 다루고 있음
  -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모델은 거의 빠짐없이 강조

## 2. 지역사회복지와 실천전략 (3)

05

- Rothman 의 지역사회개발모델
  - 자조기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목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초점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조가 강조되므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 집단구성원, 또는 지역의 각 부분에서 활동하는 대표자들의 공동참여가 필요함(지은구·조성숙, 2010)
  - 이 모델에 따르면,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변화전략은 *“함께 모여서 함께 문제를 논의해 보자(Lets all get and talk this over)”* 로 귀결
  - 핵심: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들에 의한 의사결정(홍현미라 외, 2010)
  - 지역 빈곤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지역주민 당사자를 문제해결의 주체로 인식  
→ 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 주요한 실천전략으로 의미를 갖고 있음
- 협동조합
  - 지역사회개발실천전략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왔고(홍현미라 외, 2010), 사회적기업의 운영방식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음

##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복지 (1)

06

### 1) 사회적기업의 운영원리

- 사회적기업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할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1)
-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의 개념 규정
  - 근거: 유럽 15개국가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공통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개념 규정

#### ❖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 ① 지속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
- ② 높은 수준의 자율성(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 정부의 직·간접적 관리운영 배제)
- ③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재정이 사회적기업 구성원 노력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재정위험은 불가피함)
- ④ 유급노동의 최소화(사회적기업은 화폐, 비화폐 자원과 자원봉사자와 유급노동의 결합)



###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복지 (2)

07

#### ❖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 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
- ② 시민들에 의한 설립(특정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람들이 설립)
- ③ 자본 소유 수준과 무관한 의사결정권(1인 1표)
-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서비스 수급자 혹은 소비자가 참여, 지역내 민주주의 확산)
- ⑤ 이윤배분의 제한(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음)(Nyssens ed, 2006)

#### 2) 사회적기업의 목표

- 사회적 목표: 지역사회에 기여
- 경제적 목표
  - 사회적기업의 기업적 속성
  -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비상적 자원 동원
  - 재할 서비스 판매, 공적 지원금, 자발적 자원을 통하여 거래비용, 생산비용 절감
- 사회정치적 목표: 사회적 자본의 형성(민주적 의사결정, 신뢰와 참여)

###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복지 (3)

08

#### 3) 사회적기업과 지역복지발전

- 지역복지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이유
  -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정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 긍정적 이웃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생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계약의 실패

시장실패에서 기인하는 비효율적 문제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이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사회적 기업이 시장이나 공공부문의 실패를 보완할 있다고 보는 근거
  - ① 사회적기업이 갖는 사회적 목적
  - ② 비영리적 특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동소유 및 공동관리

###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복지 (4)

09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 기제로 작동 가능
  -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가와 고용창출은 지역복지발전에 기여
- 사회적기업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사회개발(복지) 의미(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

| 구분      | 특성                       | 내용                                                                                  |
|---------|--------------------------|-------------------------------------------------------------------------------------|
| 첫 번째 관점 | 지역개발의 주체와 내용을 외생적 요소로 설명 | 외국의 투자, 자본이전, 공공의 개입, 인프라, 혁신적 조치 등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원천                                   |
| 두 번째 관점 | 지역사회의 내부적 요인에 주목         |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의 인적자본과 여타 자원의 안정화, 문화적으로 확산된 장인전통 등이 지역 개발의 동인(Borzaga & Tortia, 2009) |

- 사회적기업은 물질적 자원의 흐름과 투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인적자원, 사회적자본, 대인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류만희, 2012).

### 3.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복지 (5)

10

#### 4)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 사회적 기업은 준공공재의 재화 공급을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수준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고용과 생산의 증대를 가져옴
-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이때 창출된 일자리는 기존의 고용의 대체하지 않음으로 고용인들의 만족도 제고
- 사회적기업의 이윤배분 제한은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 예컨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고용취약계층의 빈곤 예방 가능
-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지역자산을 이용하여 지역연대를 강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네트 워크 형성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외부효과 유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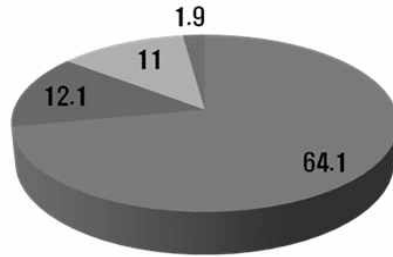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1)

11

### 1) 사회적기업의 현황

- 2012년 12월 현재 77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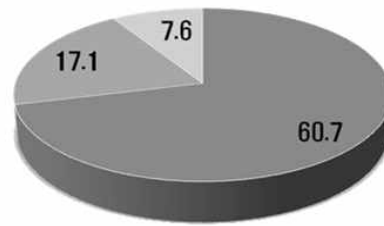
❖ 설립경로(비율, %)



-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 자활공동체
-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시설
- 협동조합 기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년 6월 기준

❖ 사회적기업 유형(비율, %)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2)

12

### 사회적기업의 핵심적 역할 →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의 고용 현황: 07년 2,539명에서 11년 15,990명
- 평균 고용인원: 07년 49.8명, 11년 25.3명으로 감소

### ❖ 사회적기업의 인증년도별 일자리사업 고용과 자체 고용수

(단위: 명, %)

| 고용인원   | 인증연도 | 항목    | 2008        | 2009        | 2010        | 2011        |
|--------|------|-------|-------------|-------------|-------------|-------------|
| 총 계    | 2007 | 일자리사업 | 1,787(68.7) | 2,211(61.1) | 562(23.0)   | 139(6.0)    |
|        |      | 자체고용  | 813(31.3)   | 1,410(38.9) | 1,884(77.0) | 2,197(94.0) |
|        | 2008 | 일자리사업 | 2,330(58.2) | 3,355(61.4) | 2,179(46.0) | 945(23.7)   |
|        |      | 자체고용  | 1,676(41.8) | 2,113(38.6) | 2,553(54.0) | 3,034(76.3) |
|        | 2009 | 일자리사업 | -           | 835(46.5)   | 682(31.2)   | 805(36.1)   |
|        |      | 자체고용  | -           | 959(53.5)   | 1,505(68.8) | 1,424(63.9) |
| 기업별 평균 | 2007 | 일자리사업 | 40.6(68.7)  | 47.0(61.1)  | 12.2(23.0)  | 3.2(6.0)    |
|        |      | 자체고용  | 18.5(31.3)  | 30.0(38.9)  | 41.0(77.0)  | 51.1(94.0)  |
|        | 2008 | 일자리사업 | 16.9(58.2)  | 22.2(61.4)  | 14.3(46.1)  | 6.4(23.7)   |
|        |      | 자체고용  | 12.1(41.8)  | 14.0(38.6)  | 16.8(53.9)  | 20.5(76.3)  |
|        | 2009 | 일자리사업 | -           | 11.4(46.5)  | 9.0(31.2)   | 10.5(36.1)  |
|        |      | 자체고용  | -           | 13.1(53.5)  | 19.8(68.8)  | 18.5(63.9)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즉 07년 인증기업은 10년, 11년에 대폭 감소, 08년 인증기업은 11년 대폭 감소 추세
- 자체 고용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고용인원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기업이 일정부분 고용창출에 기여
- 그러나 최근 인증된 기업일수록 고용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3)

13

❖ 인증연도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비율, 참여기업별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단위: 개소, 명, %

| 항목              | 인증연도 | 2008      | 2009      | 2010      | 2011      |
|-----------------|------|-----------|-----------|-----------|-----------|
| 일자리사업<br>참여 기업수 | 2007 | 39(75.0)  | 40(78.4)  | 32(68.1)  | 20(46.5)  |
|                 | 2008 | 93(56.0)  | 132(82.0) | 115(75.2) | 98(66.2)  |
|                 | 2009 | -         | 43(55.8)  | 45(58.4)  | 59(76.6)  |
|                 | 2010 | -         | -         | 146(88.2) | 184(88.0) |
|                 | 2011 | -         | -         | -         | 118(76.6) |
|                 | 계    | 132(60.6) | 215(74.4) | 338(68.8) | 479(75.9) |
| 평균인원            | 2007 | 45.8      | 55.3      | 17.6      | 7.0       |
|                 | 2008 | 25.1      | 25.4      | 18.9      | 9.6       |
|                 | 2009 | -         | 19.4      | 15.2      | 13.6      |
|                 | 2010 | -         | -         | 14.6      | 12.2      |
|                 | 2011 | -         | -         | -         | 10.9      |
|                 | 계    | 31.2      | 29.8      | 16.4      | 11.3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 사회적기업의 증가속도, 참여자 수,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참여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4)

14

❖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경영지표 추이

단위: 천원, 개소, %

| 인증연도 | 항목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07 | 매출      | 870,552  | 1,215,216 | 1,481,611 | 1,675,230 | 2,027,076 |
|      | 영업이익    | 60,784   | -         | -292,767  | -251,780  | -232,697  |
|      | 영업외수익   | -        | 717,827   | -         | 330,656   | 336,138   |
|      | 당기순이익   | 90,860   | 96,306    | 95,478    | 10,540    | 70,756    |
|      | 영업이익 양  | 27(73.0) | -         | 9(17.7)   | 6(13.6)   | 10(23.3)  |
|      | 당기순이익 양 | 40(80.0) | 43(93.5)  | 35(68.6)  | 25(56.8)  | 29(69.0)  |
| 2008 | 매출      |          | 395,614   | 715,927   | 863,145   | 894,381   |
|      | 영업이익    |          | -         | -198,032  | -218,174  | -181,209  |
|      | 영업외수익   |          | 230,697   | -         | 299,952   | 208,533   |
|      | 당기순이익   |          | 33,881    | 12,886    | 21,939    | 8,709     |
|      | 영업이익 양  |          | -         | 32(19.9)  | 20(13.1)  | 20(13.5)  |
|      | 당기순이익 양 |          | 122(77.2) | 107(66.5) | 104(68.0) | 93(63.7)  |
| 2009 | 매출      |          |           | 437,949   | 671,579   | 782,544   |
|      | 영업이익    |          |           | -80,375   | -147,243  | -131,934  |
|      | 영업외수익   |          |           | -         | 199,625   | 161,672   |
|      | 당기순이익   |          |           | 1,971     | 25,762    | 2,431     |
|      | 영업이익 양  |          |           | 30(39.0)  | 12(15.6)  | 12(15.6)  |
|      | 당기순이익 양 |          |           | 52(67.5)  | 52(67.5)  | 47(61.8)  |

<표 계속>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5)

15

### ❖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경영지표 추이

단위: 천원, 개소, %

| 인증연도 | 항목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10 | 매출      |      |      |      | 532,532   | 717,452   |
|      | 영업이익    |      |      |      | -125,931  | -140,017  |
|      | 영업외수익   |      |      |      | 147,852   | 162,001   |
|      | 당기순이익   |      |      |      | 9,008     | 155       |
|      | 영업이익 양  |      |      |      | 41(19.2)  | 27(12.9)  |
|      | 당기순이익 양 |      |      |      | 144(67.6) | 130(62.2) |
| 2011 | 매출      |      |      |      |           | 604,009   |
|      | 영업이익    |      |      |      |           | -108,048  |
|      | 영업외수익   |      |      |      |           | 139,452   |
|      | 당기순이익   |      |      |      |           | 17,874    |
|      | 영업이익 양  |      |      |      |           | 20(13.0)  |
|      | 당기순이익 양 |      |      |      |           | 98(64.5)  |

주: 2008년의 경우 영업이익의 자료가 부정확하여 제외. 각 셀별로 일부 무응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값을 제시.  
영업외 수익의 경우 2009년까지는 조사되지 않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6)

16

-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 수준: 지속적으로 하락<ppt 12-13쪽 표 참조>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참여자 수의 인위적 조정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여짐]
- 영업이익<ppt 14-15쪽 표 참조>
  - 07, 08년 인증사업 장: 당해년도 영업이익 발생
  - 09,10,11년 인증된 사회적기업: 당해년도에도 영업손해 발생
  - 1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수준은 07년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3.3% 이지만 나머지 년도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13% 수준
- 사회적기업의 고용지표와 경제지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

### 2) 사회적기업의 과제: 구매시장의 형성과 지원

- 이인재 외(2012)의 사회적기업의 영역별 경쟁력 수준 측정 결과
  - 생산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장형성, 판로개척의 핵심사항: 사회적기업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7)

17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경영과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
  - “시장 조사 및 고객확보”
-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생존 전제 조건이 이를 어느 정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한 각종 지원
-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경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요구사항

### 3) 시장형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공공구매 우선을 비롯한 생산된 상품의 안정적 판로 개척임은 주지의 사실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8)

18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의거 우선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 중앙정부,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 단,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실적 한계
  - 구매지원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은 여전히 공공구매 강화 필요성을 제기
- 최근 제기되는 해결 방안
  - ‘사회적기업 가점부여제’
  - ‘종합평가 입찰제도’
  - ‘사회적 책임조달제(서울시 시행)’
  -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공공기관 평가지표 활용 등

## 4.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9)

19

- 공공우선구매 활성화 전략 의미
  - 사회적기업이 담당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한다는 차원
- 사회적기업 지원전략의 한계
  -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독자적인 생존전략으로 한계
  - 기존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사업장과의 불필요한 경쟁구도 형성 가능성이 높음
- 공공기관우선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 생존지속 보장 수단으로서 역할은 제한되어야 함
- 정부 지원을 받지만, 관리운영의 독립 또는 자치적 운영 보장이 필수적이나 지원 강화는 사회적기업의 역동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고용지표 변화에서 정부 지원은 사회적기업 생존여부에 필요요인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인건비 지원 종결 → 고용감소 → 매출액 감소 → 영업이익 감소
- 따라서 공공기관우선 구매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 차별성있는 시장형성 및 판로 개척이 필요함. 연구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작은 규모지만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실천경험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시장형성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봄

## 5.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협동조합 (1)

20

### 1)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 정의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으로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
-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의 86.1%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인재 외, 2012)
  - 결과의 함의: 기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조직(주식회사 및 모법인 내 사업단 등) 으로부터 ‘적합한’ (이인재 외, 2012) 조직형태로 전환이라는 점은 인정 가능 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여짐
  - 실제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음 [자금지원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지원은 규정이 없음]

## 5.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협동조합 (2)

21

### 2)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상생 사례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유사성
  - 사회적경제 조직
  - 지역사회의 문제와 복지욕구 해결기제로 시장성을 배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대응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
  -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지향
  - 협 동 조 합: 조합원 이익을 지향
- ✓ 그러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신명호, 2008)

## 5.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협동조합 (3)

22

- 지역사회에서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방안(류만희, 2012)
  - 생산영역의 사회적기업 + 소비영역에서 생활협동조합의 결합
  - 사례: 친환경급식 ‘맞두레’

◎ 맞두레는? 2010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당년도 12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연계형 사회적기업

- 2011년 현재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10명 취약계층 근로자
- 결식아동 대상으로 급식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2011년 1,000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지원
-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 생산자 조합인 원주생명농업(협동조합), 원주가농영농조합, 현재산영농조합으로부터 학교 급식용 무농약 쌀(해울미) 수매하고, 친환경농산물 약정 재배하여 생산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원주지역의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공급
- 2012년 매출액: 15억원
- 매출액 14.1%에 해당하는 2억 2천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

“사회적기업 맞두레는 09년과 10년 인건비를 지원받은 상황에서도 적자상태, 11년부터 4천만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적자.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적자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시장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도 흑자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맞두레 대표 인터뷰, 2012.6.4.]



## 5.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협동조합 (4)

23

- 향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맞두레의 계획
  - 해올미(친환경 쌀) 이외의 다양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생산자 조합과 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확대 노력
- 맞두레의 경험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완성된 사례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나 맞두레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첫째, 사회적기업이 시장을 형성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필요함.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시장형성의 역할 보다는 민간기관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예컨대, 원주지역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간의 협력)를 이끌어 내고, 그 과정에서 민간주도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 둘째,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지역내 자생적인 사회경제조직이 상생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기관별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 6. 결론

24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실천 전략으로서 이미 활용되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음
- 최근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현재 상황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전략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주목해야 함
-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유기적 구성과 운영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복지실천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관심이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부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침투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24

- Borzaga and Torita(2009). "social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tonella Noya(ed), 2009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 OECD
- Carlo Borzaga & Ermanno Tortia(2009), "social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tonella Noya(ed),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 OECD.
- Carlo Borzaga & Jacques Defourny(2004).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EEDGE.
- Nyssens marthe(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Routledge
- Xavier Greffe(2007). The role of the social economy in local development.
- 김선기(2012). "지역 호혜(互惠) 시스템 구축과 참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한 제안",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시즌II: 협동조합, 원주의 길을 묻다] 세미나 자료집.
- 류만희(2012).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 기능과 시장형성에 관한 연구 :
-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3호.
- 홍현미라 외(2010).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지은구 외(2012).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오정수 외(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최일섭 외(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감정기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 박태영(2008).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 이인재 외(2012).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최옥채(2011). "지역사회복지 정체성 탐색:사회복지실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8권.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토 론

이 강 익 (강원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본부장)

용 정 순 (원주시의회 의원)



## 토 론 문

### “지역복지실천전략과 사회적경제”

이 강 의 (강원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본부장)

#### 1. 발제문 요약

○ 발제자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영역과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시론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복지 조직의 하나임.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일체의 사회적 노력”임.

\* 사회적기업 = 지역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영업활동)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조직.

#### ○ 지역복지 발전에서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이유

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 소득증가와 고용창출

② 긍정적 이웃효과(사회적자본 확충)가 발생한다는 점

③ 시장실패 및 공공부문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

\* 근거 : 사회적 특성, 비영리적 특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공동소유 및 공동관리

④ 지역자산을 이용한 내발적 지역발전에 기여

#### ○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성과(토론자 보안, 2011년 기준)

|             |        | 35개<br>업체(명) | 업체당<br>평균(명) | 비중<br>(%) |
|-------------|--------|--------------|--------------|-----------|
|             | 계      | 821          | 23.5         | 100.0     |
| 성별          | 여성     | 593          | 16.9         | 72.2      |
|             | 남성     | 228          | 6.5          | 27.8      |
| 연령별         | 29세이하  | 54           | 1.5          | 6.6       |
|             | 30~39세 | 112          | 3.2          | 13.6      |
|             | 40~54세 | 359          | 10.3         | 43.7      |
|             | 55세이상  | 296          | 8.5          | 36.1      |
| 일자리<br>여부   | 일자리사업  | 289          | 8.3          | 35.2      |
|             | 자체고용   | 532          | 15.2         | 64.8      |
| 취약계<br>층 여부 | 일반인    | 317          | 9.1          | 38.6      |
|             | 취약계층   | 504          | 14.4         | 61.4      |

|                         |      | 35개 업체<br>(천원) | 업체당<br>평균(천원) |
|-------------------------|------|----------------|---------------|
| 고용 실적<br>(연간임금<br>총액)   | 계    | 10,572,768     | 302,079       |
|                         | 취약계층 | 5,875,524      | 167,872       |
| 사회서비스<br>(서비스<br>할인 금액) | 일반인  | 4,697,244      | 134,207       |
|                         | 계    | 3,065,888      | 87,597        |
|                         | 취약계층 | 2,336,797      | 66,766        |
|                         | 일반인  | 731,091        | 20,888        |
| 합계                      | 계    | 13,638,656     | 389,676       |
|                         | 취약계층 | 8,212,321      | 234,638       |
|                         | 일반인  | 5,428,335      | 155,095       |

- 도내 35개 사회적기업의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 2013 춘계 학술대회 \***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도내 35개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299억원, 고용 821명이고, 사회적 성과 (고용실적 + 사회서비스 할인 실적)는 136억원, 업체당 3억9천만원이다. 취약계층에만 한정할 경우 사회적 성과는 82억원, 업체당 2억3천만원이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의 총지원금(45억원, 업체당 1억2천만원) 대비 3.0배이다, 취약계층에만 한정할 경우 사회적 성과는 1.8배이다.

**○ 한국의 사회적기업 상황**

- 사회적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고용창출 및 서비스 제공에서 일정수준 역할 담당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영세화 현상’ : 평균고용인원, 매출, 영업이익 등 하락.

**○ 사회적기업의 과제 :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비롯한 안정적인 판로 개척**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
- 사회적기업 가점부여제, 종합평가입찰제도, 사회적책임조달제, 최저가치 낙찰제도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유효하지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함
  - \* 독자적 생존전략으로서 한계, 여타 사업장과의 불필요한 경쟁구도(공정성 논쟁), 사회적기업 운영의 역동성·자율성 저하
- 따라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병행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시장형성 및 판로개척 필요
  - \* 새로운 전략 : 생산영역의 사회적기업 + 소비영역에서의 생협의 결합(맞두레)

**2. 논의의 완결성이 높이기 위해 보완할 부분**

**○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조례, 2012).

<표>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 <성격 I>                 | <성격 II>              | 유형 분류             | 세부 설명                 |
|------------------------|----------------------|-------------------|-----------------------|
| 국가<br>▼<br>▼<br>○<br>○ | 정부 의존<br>▲<br>○<br>▼ | 공공지원형<br>일자리사업    | 복지부 장애인 보호작업장         |
|                        |                      |                   |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단(공익형/시장형) |
|                        |                      |                   |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공익형/시장형)  |
|                        |                      |                   |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                        | 자립지향                 | 공공지원형<br>사회적경제 기업 | 복지부 자활기업              |
|                        |                      |                   | 행안부 마을기업              |
|                        |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                      |                   | 고용부 (예비)사회적 기업        |

| 사회적경제<br><br>○<br>○<br>▲<br>▲<br>'시장' |    | 사회적경제<br>민간지원기관 | 대안금융기관(지역화폐/마이크로크레딧) |
|---------------------------------------|----|-----------------|----------------------|
|                                       |    |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                                       |    |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조직         |
|                                       |    |                 | 시민단체(서비스 공급형)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 생활협동조합               |
|                                       |    |                 | 일반협동조합               |
|                                       |    |                 | 농협/수협/산림조합           |
|                                       |    |                 | 신협/새마을금고             |
|                                       |    | 비영리             | 시민단체,<br>협동조합        |
|                                       | ▲  |                 |                      |
|                                       | ○  |                 |                      |
|                                       | ▼  |                 |                      |
|                                       | 영리 |                 |                      |

자료 : 노대명(2007: 63)을 재구성.

○ 사회적경제 조직이 왜 준공공재 및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

|      | 배제성 | 비배제성 |
|------|-----|------|
| 경합성  | 사적재 | 공유재  |
| 비경합성 | 집합재 | 공공재  |

- 여기서 준공공재란 소비는 경쟁적이지만 윤리적 근거로 배제될 수 없는 '공유재'나 공공재처럼 비경합적이고 높은 고정비용을 가지고 있는 과소공급이 우려되는 '집합재'를 말함.
- 선진국에서 사회서비스 시장은 정보비대칭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확보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기업은 영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유사 동종 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해 높고 인적자원개발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과 의의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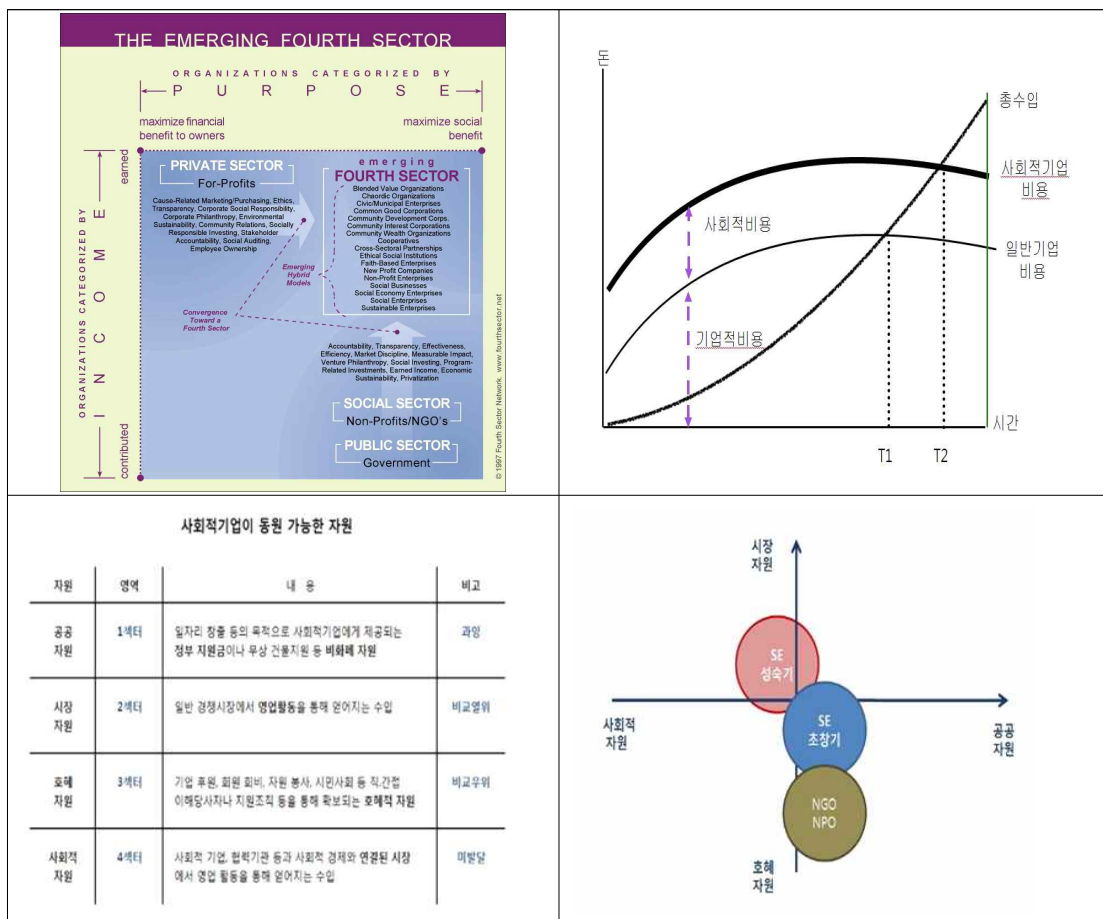
- ① 지역사회복지 실천 주체의 범위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대
  - \* 보조금, 후원금, 자원봉사 중심의 복지단체 + 비즈니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단체
- ② 지역사회복지 전달에서의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문제 해결가능성 증대
  - \* 바우처사업의 시장주의적 해결의 한계(정보의 비대칭성, 저품질-저임금 문제)
  - \* 사회적경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 및 중품질-중임금 시장의 가능성 높음.
- ③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 관료적 운영, 불투명 → 민주적 운영, 투명성
  -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 자율경영공시 등으로 기대감이 높음.
- ④ 지역사회복지 전달의 '혁신'을 불러넣을 가능성
  - \* 사회혁신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과 실천
- ⑤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순환경제의 융복합을 통한 종합적 지역개발의 가능성 증대

**\* 2013 춘계 학술대회 \***

\* 사회복지 그룹 + 사회적경제 그룹 + 시민단체 그룹의 만남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자원혼합의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 필요.

-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대의마케팅 확대, 공공부문 및 비영리부문의 비즈니스 방식 도입 등으로 섹터간 경계 약화 → 수익창출과 공익적 역할을 하는 4섹터(사회적경제)의 확대
  - 제4섹터 내에서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립성 문제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각 섹터의 '자원혼합'의 문제와 직결됨.
  -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자원혼합의 형태 및 변화의 경로를 고려해야 함
- ※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초기자원은 1섹터 및 3섹터 비중 높음 → 이후 비즈니스의 강화를 기반으로 2섹터와 4섹터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Fourth Sector Network(www.fourthsector.org), 김성기(2012)에서 인용.

○ '사회적경제의 시장 조성'(소비시장, 자본시장, 지역통화) 문제도 위의 자원혼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론 틀과 보완적인 논의 필요.

- 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조달) : Social to Government(S2G)



**\*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

- \* 공공기관 부서별 목표실적 구매제, 공공구매지원센터, 공공쇼핑몰
-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소비자의 거래 : Social to Customer(S2C)
  - \* 복합매장, 온라인 판매, 특판행사, 사회적경제 직판장, 크라우드 펀드 등
-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일반기업의 거래 : Social to Business(S2B)
  - \* 복합매장, 원재료 구입, 기업의 사회적책임 소비 및 투자
- 사회적경제 조직간 상호거래 : Social to Social(S2S)
  - \* 복합매장, 원재료 구입, 서비스 거래(피어 컨설팅, 교육), 상호출자, 협동기금
-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람간 거래 : People to People(P2P) : 품앗이, 지역화폐
-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 신탁, 사회적경제 기금,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지역통화시스템

☞ 좋은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 론 문

### “지역복지실천전략과 사회적경제”

용 정 순 (원주시의회 의원)

#### 1.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활,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충남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조례 중)

#### 2.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람과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이 이뤄지는 한편, 활동의 주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원주시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조례 준비 중 마련된 정의)

#### 3. 원주시 관련 조례 현황 및 주요내용

■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0년 11월10일 제정. 기업지원과 발의

주요내용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운영)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에서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업무 중 제10조의 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재정 지원)**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재정지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우선구매 촉진)**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계사업)**

-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많은 일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의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① 시 관할 구역 안의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 ②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2013 춘계학술대회\***

③ 참여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①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 ② 시 관할 구역 안의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홍보 지원
- ③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4월19일 제정. 용정순의원 발의

주요내용:제4조(협동조합 육성계획 등)

- ① 시장은 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 설치 등)

- ① 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재정 지원)

- ① 시장은 협동조합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한다.
- ④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협동조합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등)

- ① 시장은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의회 사무국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협동조합의 날)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원주시 사회적 기업 등 현황

##### ▷ 사회적 기업 현황

검색결과 : 현재 8개 기업

| 번호 | 지역 | 분야  | 기업이름          | 연락처           | 기업구분  | 홈페이지                                                                                |
|----|----|-----|---------------|---------------|-------|-------------------------------------------------------------------------------------|
| 8  | 원주 | 유통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맞두레 | 033-734-1845  | 사회적기업 |  |
| 7  | 원주 | 농식품 | 영농조합법인 신화마을   | 033-733-0277  | 사회적기업 |  |
| 6  | 원주 | 청소  | (주)청교리마       | 033-765-7474  | 사회적기업 |  |
| 5  | 원주 | 청소  | (주)노나메기       | 070-7789-1145 | 사회적기업 |  |
| 4  | 원주 | 교육  | 원주YMCA아가마     | 033-747-4275  | 사회적기업 |  |
| 3  | 원주 | 청소  |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033-731-6080  | 사회적기업 |  |
| 2  | 원주 | 의료  |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033-744-7571  | 사회적기업 |  |
| 1  | 원주 | 재활용 | (유)다자원        | 033-734-4141  | 사회적기업 |  |

##### ▷ 마을기업 현황

검색결과 : 현재 3개 기업

| 번호 | 지역 | 분야 | 기업이름            | 연락처           | 기업구분 | 홈페이지 |
|----|----|----|-----------------|---------------|------|------|
| 3  | 원주 | 유통 | 문계3리 영농조합법인     | 010-8985-4704 | 마을기업 |      |
| 2  | 원주 | 교육 | 용수골 생태마을 네트워크   | 010-9333-6236 | 마을기업 |      |
| 1  | 원주 | 문화 | 회촌마을 예코문화두머 사업단 | 010-5371-5017 | 마을기업 |      |

#####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검색결과 : 현재 16개 기업

| 번호 | 지역 | 분야 | 기업이름        | 연락처          | 기업구분    | 홈페이지                                                                                  |
|----|----|----|-------------|--------------|---------|---------------------------------------------------------------------------------------|
| 1  | 원주 | 문화 | 한국 전통예술단 마을 | 033-761-7228 | 예비사회적기업 |  |

\* 2013 춘계 학술대회 \*

검색결과 : 현재 16개 기업

| 번호 | 지역 | 분야 | 기업이름                      | 연락처           | 기업구분    | 홈페이지                                                                                |
|----|----|----|---------------------------|---------------|---------|-------------------------------------------------------------------------------------|
| 16 | 원주 | 교육 | (사)서곡생태마을                 | 033-762-0360  | 예비사회적기업 |  |
| 15 | 원주 | 보건 | 천지인초 주식회사                 | 070-8851-8858 | 예비사회적기업 |                                                                                     |
| 14 | 원주 | 환경 | 주식회사 해온                   | 033-745-7782  | 예비사회적기업 |                                                                                     |
| 13 | 원주 | 기타 | 7월의 무화과                   | 070-4232-7749 | 예비사회적기업 |                                                                                     |
| 12 | 원주 | 교육 | (주)뉴스타트                   | 070-4144-8845 | 예비사회적기업 |                                                                                     |
| 11 | 원주 | 청소 | (주)아쿠아메어닥터                | 033-766-2114  | 예비사회적기업 |                                                                                     |
| 10 | 원주 | 교육 | 용수골생태마을사업단 자연누리숲학교        | 033-762-0360  | 예비사회적기업 |                                                                                     |
| 9  | 원주 | 제조 | 오일컴&화이트티슈 주식회사            | 033-731-5159  | 예비사회적기업 |                                                                                     |
| 8  | 원주 | 기타 | (주)원주여성일자리공동체             | 033-763-2963  | 예비사회적기업 |                                                                                     |
| 7  | 원주 | 제조 | 사회복지법인 서진(서진워브스 사업단)      | 033-734-6161  | 예비사회적기업 |                                                                                     |
| 6  | 원주 | 청소 | 노인생형경비주식회사                | 033-731-6080  | 예비사회적기업 |  |
| 5  | 원주 | 교육 |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 033-734-0244  | 예비사회적기업 |  |
| 4  | 원주 | 문화 | (사)음악만들기양상봉               | 033-734-6328  | 예비사회적기업 |  |
| 3  | 원주 | 교육 | (사)한국청년센터원주지회 원주진로교육센터 세움 | 033-742-2004  | 예비사회적기업 |                                                                                     |
| 2  | 원주 | 제조 | (합)대은                     | 033-765-2190  | 예비사회적기업 |                                                                                     |

1 2 »

▷ 강원도 풀뿌리 기업 지역별 현황

강원도 풀뿌리기업 지역별 현황 그래프





## 5. 행정 및 재정 지원 현황

### “풀뿌리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에 가치를 두고 지역경제(지역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기반을 둔 경영조직체

|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
| 정 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li> <li>•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li> <li>•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li> <li>•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기업</li> </ul> |
| 지정주체           | 고용노동부                                                                                                                                                                                      | 강원도/중앙부처                                                                                                                                                                          | 행정안전부/강원도                                                                                                                                                              |
| 지정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부처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                                                                                                                    | 마을기업 육성시행 지침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 사업비(1~50인)</li> <li>• 전문인력 고용비 (3인 이내)</li> <li>• 사업개발비(7천만원 이내)</li> <li>• 시설비(2천만원 이내)</li> <li>• 자립 경영기반 구축비 (5년간 5천만원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 사업비(1~50인)</li> <li>• 사업개발비(3천만원 이내)</li> <li>• 시설비(2천만원 이내)</li> <li>• 자립 경영기반 구축비 (3년간 8백만원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차 : 5천만원 이내</li> <li>☞ 자부담 10% 이상</li> <li>• 2년차 : 3천만원 이내</li> <li>☞ 재심사를 통해 지원</li> </ul>                                 |
| 지정현황 ('13.03월) | 37개                                                                                                                                                                                        | 87개(강원도 83, 부처 4)                                                                                                                                                                 | 62개                                                                                                                                                                    |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 기획주제발표 2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이 은 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이 은 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 들어가며 : 새로운 시민참여형 지역 활성화 전략, 사회적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경제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요구가 드높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기업' 등 경제용어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듯, 지난해말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여 시대정신으로 주창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데 이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도 강화되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며 그 범주를 점차 넓혀왔는 바, 빈곤수급계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 육성(복지부, 1996년),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고용부, 2003년)에 이어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2009년), 마을기업(행안부, 2011년)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부터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사회적기업 육성 책임이 이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 들어 충남도 및 서울시를 중심으로 그간의 협소했던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림1)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패러다임 전환 방향





이러한 ‘사회혁신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로의 접근’ 관점은 사회적기업들이 그간 보여준 취약 층 고용창출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의 목표는 그 자체로서 보 다는,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물로서 달성 가능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mission-driven organization dlksms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라 평가되며, 사회적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의 진단 및 해법에서의 혁신성, 타당성 및 파급력의 중요성을 재합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이에 이글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혁신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특히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접근하려 한다.

## 2. 사회적경제의 이해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이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social mission-driven)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거 나 이를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업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Pearce, 2003)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 나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수익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 투자 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2007년, 7월 시 행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근거한 인증심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한편 국제협동조 합연맹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시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란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지역내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지속적 으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김운호, 서울시립대) 이렇듯 시민사회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중에

있다. 이때 사회적경제란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경제영역으로서, 이윤극대화 보다 구성원과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호혜성(互惠性)과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대안적 경제체계’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중에 가장 개방적인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조직이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저성장기 도래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과 공장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내수 활성화의 기반인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 사회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지역커뮤니티 붕괴로 대응책 부족 등 사회적 위기와 혁신의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구유출,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 심화, 지역발전의 외부 의존도 심화, 지역지원 정책사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다. 이제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다.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형 부동산 재개발형의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협력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역사회의 인력과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전략, 즉 bottom up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아래로 부터의 내발적 발전 모델로 시민참여 경제조직인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제3섹터 내 자발적 실험기 :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의 태동은 제3섹터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빈민운동 진영의 생산자협동조합, 빈민지역 탁아소 및 공부방, 육아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의 자생적 조직들이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원형을 만들고 주체를 형성해왔다. 물론 더 넓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농촌 공동체들인 두레, 계, 품앗이 등에서 그 전통을 찾거나 일제 치하에서 정치운동과 함께 성장한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에서 출발점을 찾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역사는 대부분 해방 이후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단절되어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 이중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건설업이나 봉제업 등 전통적으로 빈곤 계층이 가지고 있는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일반시장 진입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저가의 중국 상품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본력 및 경영역량 부족 등으로 다수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 **b. 빈곤 및 실업해소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연계한 제도 진입기 : 1996년 ~ 2003년 상반기**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을 주도하였던 실업빈곤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96년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사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협동조합 방식의 빈민 자활공동체 설립이 제도권 내에



## \* 2013 춘계 학술대회 \*

서 실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맞아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현 함께일하는재단)의 시민사회 주도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일자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한편, 2001년 사회적기업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에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에 이른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자활공동체 창업이 확대되거나 자활공동체 사업이 생계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부 참여라는 방식의 한계를 가지면서 영리시장 진입형 사업들이 급격히 위축하게 되었고, 빈민층을 대상으로 자본출자와 높은 수준의 민주적 참여를 요구하는 생산자협동조합 설립이라는 단일한 발전경로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유럽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 c. 신빈곤층 일자리 창출 정책 활용기: 2003년 7월 ~ 2006년 중반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시작된 신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 수립 논의가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해 가시화되는 가운데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전망이 제시되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형태를 취하며 매년 급성장해 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힘입어 교육·문화·환경 등 전문성을 가진 NPO 참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민간차원에서도 사회연대은행과 실업극복국민재단(현 함께일하는재단)의 사회적기업 창업자 신용대부가 시작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함께일하는재단의 ‘교보다솜이케어서비스사업’과 같은 기업-NPO-정부 협력형 사회적기업 창업 모델이 개발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언론 캠페인 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2005년, 사회적기업 법률 제정을 위한 테스트포스팀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회적기업내 주도세력도 변화를 보이는데, 과거에는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단체들이 절대적인 주도그룹을 형성하였다면 이때부터는 사회서비스 영역별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청년층의 소셜벤처(social venture) 창업 등 주체가 다양화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자원네트워크가 활용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회적기업이 제공 가능한 사업 분야도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에서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농촌마을관광, 대안에너지, 공정무역, 지역개발,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기에 이른다.

### d. 사회적경제 제도화 확대기 : 2006년말 ~ 현재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로 인한 실업빈곤 해소책이자 대안적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6년 1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다. 또한 2010년 2월 부터 사회적경제의 지역화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지자체로 이관되거나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책현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2012년 12월 1일 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따른 소규모 협동조합 지정 및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도 시작된다. 이에 2013년 3월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규모는 약 6,399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828개, (예비)사회적기업 1,381개, 자활기업 2,752개, 마을기업 550개, 전통적 협동조합 199개, 신설 협동조합 689개소)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한 ‘광역 지자체장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의무화’ 이후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 선순환적 복지전달망 구축’ ‘지역재생’ ‘내발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의 자발적 결합에 기반한 자조경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총체적 발전’을 강조하는 신내발적 발전론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에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기존 시장경제 조직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개방적 연대주의에 기초한 경제’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지배구조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모델이 될 것인가도 검증을 요구받는 상황이라 본다.

### **3. 지역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실천 사례**

사회적기업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정리한 Bolzaga & Torita(2009)의 논문을 보면, 사회적기업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준공공재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지역사회복지 개선이라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내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는 여성, 노인 등에게 특히 이로운 고용이어서 지역사회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영리기업의 고용창출과는 다른 성격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축진은 외생적 발전과정에서는 구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지역사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찾고 실현케 하는데, 즉, 이동하기 쉽지 않은 지역자원(역사적 환경적 유산, 자원노동(voluntary labor) 등의 인적자본)의 가치를 찾아내고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증진된 사회적 신뢰관계를 통해 지역수준의 사회적자본 축적을 유리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정부나 OECD가 발행한 사회적기업 정책성과 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설명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지배구조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과 취약계층 노동통합력 제고에도 있으나 다양한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및 신뢰자본 축적을 돕고 결국 시민들의 사회혁신활동 촉진과 윤리적이고 협동적인 소비·투자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2)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영향력 평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

- 사회적경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경제는 창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킴
-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재생과 사회통합,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있음. 특히, 소외계층이 기술을 익히고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 사회적경제는 공정거래와 같은 윤리적 실천을 주도하고, 윤리적 시장(ethical markets)을 촉진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증가시킴

(출처 : Office of the Third Sector(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영향력

-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 사회적경제는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집단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사회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시민사회 발전에 공헌함

(출처 : Paola Bobos 외(2006), Reviewing OECD experience in social sector)

이러한 Bolzaga & Torita(2009)의 논문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개선 사례, 빈곤 및 불평등 해소 사례, 그리고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기능하므로써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개선 사례

장애인 · 노인 · 노숙인 · 다문화가정 · 빈곤 아동청소년 등 기존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중인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빅이슈코리아,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진천군주거복지센터, 광주YMCA 아가야, 목표이주외국인상담센터, 행복도시락주식회사, (유)열린사회서비스센터 등 보건복지 및 교육분야가 13.8%(114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인 늘푸른돌봄센터는 ‘참여, 자치, 나눔의 공동체’를 미션으로 하는 광진주민연대부설 광진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이다. 2008년,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장년 실직여성들의 자활공동체로 출범하여 재가요양보호 · 산후도우미 · 노인 돌봄 · 장애인 활동보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2011년말 기준으로 14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모범인을 통한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장년 여성실직자들에게 실비 수준의 요양보호사 및 산후도우미 자격훈련을 제공하고, 무료 공익서비스 현장을 이용한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실습훈련을 추진한다. 교육훈련을 수료한 인력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고용인력을 구성하고, 지역내 복합적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 가능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시장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고임금 일자리는 아니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수준의 무기계약 형태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활공동체 단계에서 부터 참여자소모임 등 팀빌딩을 위한 노력과 주민리더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늘푸른돌봄센터는 모법인인 광진주민연대와 함께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협의기구를 통해 대변되고 요구되는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며 직원 및 이용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체계화, 성동주민의원 의료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여하는 가운데 기업형태의 주민운동 조직을 지향한다. 이는 늘푸른돌봄센터가 광진주민연대라는 지역시민운동조직과 지역 의료생협 준비 조직, 그리고 지역내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 속에서 만들어졌고, 이들 조직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며 설립취지에 기반한 운영을 돕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두 번째 사례는 세종아동후원회에서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장애인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라는 단순 공식을 해체하여, 당사자 조직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공동출자· 공동생산· 협력소비· 재투자를 통한 동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지역복지를 통한 가치 선순환 모델’ 사례이다.

2001년 경기도 안양에 설립된 세종아동후원회는 ‘장애아동 토탈 가족지원사업’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장애인아동 부모들이 모여 인근 스포츠센터 교사에게 장애아동 체육서비스를 위탁했던 경험을 토대로 풀뿌리 후원회원 4백여명을 조직하여 후원회를 설립하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자조·자립의 원리에 공급, 이용하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안양을 시작으로 일산, 충북 제천 등에 쇼셜 프랜차이징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장애인 및 부모, 지역 후원자, 장애복지 전문가, 사회적기업 경영진이 참여하는 의결구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 2013 춘계 학술대회 \***

|                                                                                                                                                                   |                                                                                      |
|-------------------------------------------------------------------------------------------------------------------------------------------------------------------|--------------------------------------------------------------------------------------|
| <p><b>장애아동 통학차량 운행 서비스</b></p> <p>자가 통학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p>                                                    |    |
| <p><b>장애아동 사회스포츠 프로그램</b></p> <p>장애인의 규칙적 운동관리를 위해 특수체육, 수영교실, 거북이 산악교실, 비만교실 등 운영</p>                                                                            |    |
| <p><b>장애아동 방과후지도 및 보호시설 운영</b></p> <p>하교 후 저녁시간까지 안전하게 장애아동을 보육·교육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음악치료, 미술치료, 성교육, 요리교육, 방학중 지역기관 연계수업 등 다양 운영</p>                              |   |
| <p><b>직업재활서비스 및 착한가게 운영</b></p> <p>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부모를 위한 직업훈련, 학교연계교육, 평생교육 서비스 및 작업장 운영, 경기지역 사회적기업 생상품 판매장 운영 등</p>                                           |  |
| <p><b>장애인 교육농장 운영</b></p> <p>2009년, 장애청년들의 노후문제에 대한 해법을 위해 수도권 서비스 이용자들의 공동출자로 충북지역에 장애인 교육장 및 농장을 운영하며 장애청소년들의 공동생활과 수익사업을 통합시키거나, 지역 특산물 연계한 한방 간식류를 제조, 판매</p> |                                                                                      |

**2) 빈곤 및 불평등 해소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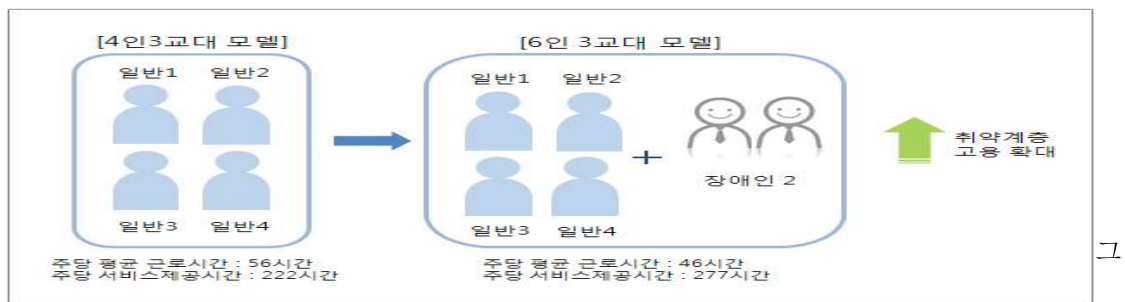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기업사회공헌과의 협력을 통해 ‘다인간병시스템 체계화 및 3교대제 간병노동’을 정착화시킨 (재)다솜이재단의 사례이다. (재)다솜이재단은 2004년 (재)함께일하는재단과 (주)교보생명 간의 협력 하에 중장년 취약계층 여성고용 증대 및 간병업종 노동시장 개선, 병원 내 다인간병 시스템화를 통한 수혜자 비용경감 및 간병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인큐베이팅된 사회적기업이다. 2007년 1차 사회적기업 인증시 교보다솜이케어서비스사업단에서 (재)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숨이재단이라는 법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말 현재 총 319명 (취약층 52%)을 고용하고, 연간 서비스 수혜자 실인원 12,375명 (무료서비스 1,480명 포함)을 대상으로 병원간병서비스 및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였다. 지난해 연매출은 61.7억원이며, 이중 17.8% (11억원)은 무료간병서비스에 대한 제3자 지불제도로 유입되는 기업사회공헌 기부금(영업외수입)이다.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유료간병서비스는 사업이 개시된지 7년차인 전년말 현재 자립율 101%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 여성들의 전형적 노동시장이었던 간병분야에서 중증장애인을 동반고용하는 사업모델을 개발, 추진중에 있다.

그림3) 다숨이재단 중증장애인 동반고용 모델



즉, 그간 표준화 시킨 ‘4인 3교대 공동간병 모델’에서 주당 노동시간은 줄이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늘리는 ‘6인 3교대 공동간병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를위해 서울·대전·대구 지부에서 12명의 지적장애인을 모집하여 3개월 간의 간병훈련을 제공하였으며, 훈련수료생중 8명을 고용하여 주당 35시간의 간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고용하였다. 아울러 이들 지적장애인 간병보조사들의 직무능력 분석을 통한 직무분장을 완료하였는데, 주로 물리치료실 및 화장실 이동, 시트교환, 석션통 세척, 그리고 기저귀등 폐기물 분리처리 업무를 독자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중에 이러한 사업의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13 춘계 학술대회 \***

표 1) 다솜이재단 중증장애인 동반고용 모델 훈련 및 고용 실적

| 항목     |      | 서울                       | 대전          | 대구          | 비고                        |                            |
|--------|------|--------------------------|-------------|-------------|---------------------------|----------------------------|
| 모<br>집 | 모집기관 |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대전직업능력개발원   |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맞춤훈련 진행                   |                            |
|        | 응시인원 | 8명                       | 4명          | 6명          | 총 18명                     |                            |
|        | 훈련생  | 4명                       | 4명          | 4명          | 총 12명 (남4,여8)<br>-지적장애 3급 |                            |
| 훈<br>련 | 훈련기간 | 10.10~11.30              | 09.17~12.07 | 09.18~12.07 | 총 3개월 과정                  |                            |
|        | 커리큘럼 | 직업능력개발, 신변보조, 환경정리, 이동보조 |             |             |                           |                            |
|        | 훈련방법 | 1차 : 이론 교육 (교재 및 동영상)    |             |             |                           | 외부강사 :<br>사회복지학교수 및<br>간호사 |
|        |      | 2차 : 요양원 실습              | 2차 : 교육원 실습 | 2차 : 개발원 실습 |                           |                            |
|        |      | 3차 : 병원 현장 실습            |             |             |                           |                            |
| 고<br>용 | 고용인원 | 4명                       | 2명          | 2명          | 총 8명 (남4,여4)<br>-지적장애 3급  |                            |
|        | 근무처  | 성애병원                     | 선병원         | 리더스 문성병원    |                           |                            |
|        | 근무시간 | 09시~17시 (주 35시간)         |             |             |                           |                            |

아울러 간병서비스 이용자들이 소비하는 소모품에 대한 힐링꾸러미 유통사업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저수익 파견노동 방식의 간병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성을 확보 가능한 추가 수익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일반환자용과 재활/와상환자용으로 구분, 판매중이며 힐링꾸러미 물품 구성시에 제조업종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3) 내발적 지역발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사례 : La friche la belle de mai

라 프리쉬 라 벨드매 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에서 성공적인 지역개발 사례를 만들어 온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최대의 항구도시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시설들이 동유럽 등으로 이전해가자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폐업한 공장지대를 문화예술로 재생시킨 사례이다.

라 프리쉬가 위치한 곳은 1886년부터 1990년 까지 프랑스 담배공사(SEITA)가 3개의 블록으로 건립, 운영하던 담배 제조공장(Manufacture des Tabacs)이었다. 공장이 이전한 이후, 1백년 넘게 운영되어 노후된 시설물을 재건축하자는 안에 맞서 이 시설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살린 지역재생 사업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들은 ‘예술가, 도시, 그의 도시,(L’Artiste, la Ville, sa Ville,)’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마르세이유시에 제안하였고, 이런 협력의 결과로 현재의 라 프리쉬를 만들어내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라 프리쉬가 있는 지역은 세 개의 주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35,000m<sup>2</sup>에 이르는 제1블록은 시의 직영 사업체로서 ‘예술의 지방분권화’라는 명분하에 파리 루브르 박물관 복원팀이 내려와 도시산업·문화유적 아카이브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27,000m<sup>2</sup>의 제2블록은 지역내 멀티미디어 관련 벤처타운 형태로 운영되는데 마르세이유 지역 소재의 TV 드라마 제작센터도 입주해 있다. 이에 드라마팬들의 방문관광도 활발하다. 가장 대규모인 45,000m<sup>2</sup>를 차지하는 제3블록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레지던스 시설로 라 프리쉬가 운영한다.

1991년 10여명이 설립한 제3블록내 라 프리쉬에는 현재 평균 35세의 청년 문화예술가 450명이 고용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고, 전세계적으로 1천여명의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예술교육과 공연, 지역축제 기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영위한다. 1995년 부터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벨을 참여시켜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특히 2002년 라 프리쉬가 주최한 국제 토론회 ‘예술의 새로운 영토(Nouveaux territoires de l’art)’를 계기로 유희화 된산업시설물의 예술 공간화 사업을 주도하며 외무부, 도시국, 설비 및 주거 운송부, 교육부, 청소년 및 스포츠부, 경제부, 관광국 등의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표2) 라 프리쉬 제3블록 사회서비스 현황

|            |                                                                                                                                                                        |
|------------|------------------------------------------------------------------------------------------------------------------------------------------------------------------------|
| 예술창작<br>지원 | - 지역내 문화예술 실업자 450여명 고용창출 및 1천여명의 활동공간 제공                                                                                                                              |
| 지역<br>서비스  | -500개 이상의 문화 행사 3만시간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 교육 실시<br>-빈곤한 문화소외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직업개발 서비스 제공, 공연, 전시, 영화상영, 아틀리에나 작업장 개방, 패션쇼, 토론회<br>-지역 생산물과 전통요리법을 이용한 주민 참여형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
| 국제<br>협력   | -180개의 국제협력프로젝트 (40개국 이상)<br>-200명이 넘는 해외 예술가들 활동가들 및 기관들과의 파트너 관계 유지<br>-라 프리쉬 회원 예술가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br>-자격교류, 창작상의 협조, 예술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개발 등의 주제를 통해 진행              |
| 기타         | -연간 120만 명 이상 방문<br>-낙후된 항만지역의 경제 발전과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유로 메디테라네 ('Euroméditerranée') 프로젝트 추진<br>-2013년 유럽의 문화예술도시로 선정                                                       |

#### 4.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과제

1991년 서울시 SH공사가 건립한 마포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 9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마포구청의 조사 결과, 아파트 주민 응답자 2,966명중 19.4%(576명)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대물림되는 경제적 빈곤과 공동체가 파괴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자존감의 상실이 주원인이라 하겠다. 4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중 겨우 53명만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소득증가시에는 수급권 탈락이나 퇴거조치 등 만성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에 이미 2개의 복지관이 운영중이며 인근에 자활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구청 문화센터 등의 복지/문화 인프라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에 있어 구체적인 관계망 회복과 희망의 기제로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체 임대주택의 47%에만 존재하는 '임차인 대표회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달리 수혜당사들에게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복지관의 지배구조 문제 등도 주민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고질적 문제라 본다. 이에 사회복지계의 뼈아픈 성찰과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단지내에 최근들어 주민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활동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등장하였다. 마포구의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학습모임 '의회는 대학'을 진행하는 '00은 대학' 소속의 마을활동가들이다. 이들은 주민텃밭, 가가호호 방문, 주민의 구슬생애사로 이어가는 강좌개설, 생활속의 불만·불안·불편·불통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가자는 '불만 끄는 모임' 등 새로운 마을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공실 아파트나 빈상가를 개방하여 홍대앞 문화예술가들과 사회적기업인들이 거주하며 주민공동체 복원을 모색하는 사랑방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했었던 '사회복지사의 임대아파트 공동거주를 통한 야간복지관 운영' 제안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역시, 임대아파트단지 주민참여형 복지 시범사업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임대아파트로 표현되는 저소득층 주거단지내 생활문제는 소득 뿐 아니라 주거 불안정성, 복지 및 노동 소외, 에너지, 교육 및 문화 격차, 공동체성 파괴와 슬럼화, 약물중독이나 폭력, 상대적 박탈과 우울문제 등 총체성을 보인다. 이에 기존의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역별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협력망 구축은 물론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한 보다 새롭고 담대한 문제해결 모색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캐나다 사회적기업 La Tohu (라 토후) 사례를 소개한다.

정규직 직원 5천명 이상을 고용하며 연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커스 회사인 '태양의 서커스'를 키워낸 플랫폼 사회적경제 조직이 바로 라 토후이다. 라 토후는 캐나다 몬트리올시 생미셀이라는 쓰레기 매립지역에서 친환경 메탄가스 추출판매사업과 생태도시 재생, 서커스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관광 사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은 물론 자존감·자부심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낸 성공적인 지역개발 사회적기업 사례이다.



(사진 1 생미셸 쓰레기매립지 조감도)



(사진2 라토후 공연장 외관)

la tohu가 소재한 지역은 본래 석회석 채석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170년대부터 몬트리올시에서는 광산업이 중단된 후에 남은 192 헥타르에 달하는 웅덩이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악취, 수질 및 대기오염, 쓰레기 운반 차량의 소음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급기야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몬트리올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매립장에는 4천톤 이상의 독성 화학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악취와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독성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야말로 황폐한 죽음의 땅으로 전락한 것이다.

행정소송과 주민시위, 결국 개별가구에 대한 피해보상과 쓰레기 매립 중단으로 이어지는 지역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은 사회적기업가가 등장하게 된다. 보상금을 챙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난 후 지역재생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도 없는 상황을 예견한 사회적기업가는 주민 보상금을 공동출자하도록 독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역개발 사회적기업 la Tohu를 설립하다. 라 토 후는 주민들에게 생태적 지역복원과 빈곤문제 해결,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제안한다. 일단 몬트리올시와 협의하여 오염된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메탄가스 추출관을 시공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현재 이 시설에서 정기적인 전기판매대금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저가의 전기공급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전기판매대금을 재투자하여 주민들과 함께 생태적 마을가꾸기와 함께 대형 서커스 공연장과 서커스 전문대학을 설립한다. 이를 매개로 1984년 세계 최대규모의 서커스 회사인 ‘태양의 서커스’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생미셸지역은 세계 서커스의 수도이자 문화관광 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la Tohu가 사용하는 공연장과 사무실은 모두 친환경 건축물로 인근 지역 공장의 폐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가공하여 건립된 건물이다. 서커스 산업을 통해 탈학교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주민 협동조합 창업,라 토후 건물관리 및 청소, 기술설비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개별 보상금이 아닌 지역공유 자산 형성’ ‘주민출자금을 씨앗자금으로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투자 수익금을 활용한 친고용적 문화예술 사업 추진’ ‘경제-문화-사회-정서 융합된 자조활동 추진’ 등 발상의 전환과 주민자치형 지역개발의 성공 가능성

**\* 2013 춘계 학술대회 \***

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사진 3 지역축제시 서커스공연장)



(사진 4 서커스 공연용 소품 제작팀)

이러한 해외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실험되고 확산되기 위한 과제를 제기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첫째, 전통적 사회복지 인프라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지역화를 통한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 정책사업에 있어서 10년 이상의 장기적 사회투자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1999년 영국내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년간 실시된 커뮤니티 뉴딜사업(New Deals for Community)가 좋은 사례라 하겠다. 지역당 1,080억원이 투입된 본사업을 통해 주택 및 물리적 환경개선(임대주택 건립 및 주택신용기금 운영), 건강 제고(만성질환자 환기시설 제공, 건강한 심장을 위한 건축자재 공급등), 범죄예방(CCTV 설치, 주민방범단, 마약교육등), 주민 주도 일자리 창출, 교육(초등고생 지역투어 및 비즈니스 체험기회 제공, 방과후학교 학습멘토 파견), 거주 적합성 제고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과 참된 파트너쉽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인식하에 주민·기업체·학교·공공기관·시민사회조직·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산하 실무소위에서 구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마을포럼, 청소년포럼, 비즈니스포럼등) 운영을 필수화 하여 성공율을 높였다.

셋째,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개발시에는 표 3과 같이 민민·민관 거버넌스와 역량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 서울시에서 새로이 시도한 ‘서울 시민의 생활문제중 사회적경제로 우선 접근 가능한 5대 전략분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사업 지원’ 등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보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실천 사례\***

그림4)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개발 프로세스 제안

| 단계                       | 내용                                                                                                                                                                                                       | 방법                     |
|--------------------------|----------------------------------------------------------------------------------------------------------------------------------------------------------------------------------------------------------|------------------------|
| 기초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변화 등 사회지표, 산업현황 등 분석</li> <li>• 지역 산업육성 전략 및 복지정책 등 연계성 분석</li> <li>• 중앙과 광역 육성계획과 정책 연계성 확보</li> </ul>                                                       | 출연 연구기관, 지역대학등 문헌조사    |
| 자원현황 및 욕구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및 지원요구 조사</li> <li>• 업종별 관계부서 공무원 SE 이해도 및 협력방안 조사</li> <li>•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수요 및 비용지불능력 조사</li> <li>• 지역 자원 조사 : 기부 현황 및 욕구, 귀농귀촌 역량조사</li> </ul> | 설문조사 FGI               |
|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초안 작성 (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육성 비전, 목표, 핵심과제 도출</li> <li>• 중점 사업분야 및 지원전략 설계</li> <li>• 국내외 우수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li> </ul>                                                                  | 추진단 구성 (관계부서, 민간) 사례분석 |
| 중간보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수립된 육성계획에 대한 사회적기업가,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관련 행정부서 등의 의견수렴</li> </ul>                                                                                                 | 전문가 의견수렴 부서별 의견수렴      |
|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2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2차 계획 수립</li> <li>•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li> </ul>                                                                                          | 추진단 회의                 |
| 공청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공청회</li> <li>•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li> </ul>                                                                                                        | 공청회 개최                 |
| 지역사회적기업 육성계획 확정(3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 통하여 최종 계획 수립</li> </ul>                                                                                                                         | 추진단회의                  |
| 공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간 협력 최종 확정된 계획 공고</li> </ul>                                                                                                                                  |                        |
| 워크숍 및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워크숍 및 관계 부서 공무원 교육 등</li> </ul>                                                                                                                             | 교육 및 워크숍               |

넷째,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연계한 융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개별기업의 규모적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야한다. 타지역의 수범사례를 확산시켜 지역별 문제대응력을 높이는 사회적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의 창출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 동원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이러한 자원개발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공공이 우선투자 지구화 하거나 매칭펀드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들의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한 시장 규모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저소득

## **\*2013 춘계학술대회\***

층에게 시급한 사회서비스일수록 민간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분야가 많은 바, 공공에서는 변화하는 주민수요에 근거한 사회혁신 바우처 개발 및 사회적임조달제도를 통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등을 통한 시장 형성자 역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약하나마 본고에서는 몇가지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로서의 사회적기업 활동 사례를 고찰해보고, 이들의 활동 현황과 성공요인을 분석하며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제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필연성과 정책적 연속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실제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유효하고 과급력을 보이는, 체감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의 기조가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지속가능하며 규모있는 사회적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한 배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단한 것이리라 본다. 이에 복지 안전망 확충과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계의 부단한 상상과 도전이 요구된다 하겠다.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토 론

이 용 재 (호서대 교수)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 토 론 문

#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과제, 모델

이 용 재 (호서대 교수)

과거 사회복지를 이념적 가치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경제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었다. 최소한의 삶의 영위를 위한 생계비 지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보장,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지원 등 복지정책은 국민생활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는 사회복지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빈곤율도 14.60%로 OECD평균(10.59%)보다도 크게 높다. 사회양극화는 비정규직근로자·저임금근로자·저소득층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힘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이러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를 지역사회에 공급할 건전한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혹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 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기업

시장과 공공복지로부터 소외된 영역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시장과 공공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기업과 같은 시장주체가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투자효과에 대한 의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로 인해 공공투자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적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마서 C. 브룩스(2009)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동은 민간시장이나 정부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와 욕구를 다룬다...중략...사회적기업가들은 복지 당국이 충족시키지 않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것이 판단하기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장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헌신적인 민간조직들이다...이후생략”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영역으로 구분되어있다. 이러한 공적복지제도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기업이 자원연계를 통해서 해당 영역에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빈곤·교육불평등·양육 등 문제, 청소년 일탈·폭력·자살 등 문제, 노인 빈곤·건강·여가·사회참여·자살 등 문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가정폭력·자녀양육 등 문제, 장애인 일자리·사회참여·가정 등 문제, 여성 빈곤·일자리·자녀양육 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국가에 의존하던 복지공급 주체를 국가, 민간부문, 비공식부문, 자원영역 등으로 다원화함으로써 국가의 지나친 복지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사회전체의 복지충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생산측면에서는 더 이상의 공공이나 민간과 같은 전형적인 복지공급 주체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복지혼합(welfare mix)’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비용부담 축소,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공공부문 확대 억제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였다.

요컨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혼합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공공재원 증가의 부족, 상업화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확대에 인한 낮은 수준일자리 양산으로 새로운 빈곤층(working poor)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준영·오지선, 2010:159-161).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으로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모색되었다(장원봉, 2010:48-50).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 되고 있는데, 민간자원이 개발가능성에서 정부와 상대적 우위 비교, 지역단위에서 공공과 민간간의 긴장관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노동통합이라는 목표 간의 부분적 갈등문제 등이 그것이다(이준영·오지선, 2010:161).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지역사회사회 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주민참여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이준영·오지선, 2010:163).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반이 같은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욕구를 찾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개발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보조금과 같은 공적자금, 수익과 같은 시장자원, 기부 또는 후원과 같은 자발적 기금 그리고 자원봉사 등의 복합적 자원에 의해서 운영된다.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자발적 기금과 자원봉사 그리고 그것이 지닌 정당성에 대한 신뢰정도이다. 사회적기업은 개별적인 조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합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실행하고 그것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사회적관계망으로 기능한다(장원봉,

2010:50-55)

둘째, 사회적기업의 운영방식은 기존의 영리기업에서와 같은 배타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이윤 분배원칙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 이용자, 관련시민단체, 지방정부 그리고 재정지원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목적에 기초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는 내부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무임승차의 문제를 상호감시와 제어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장원봉, 2010:54).

## 2. 사회복지 분야 사회적기업 성과와 한계

첫째,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2010년 고용노동부)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이나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계수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취약계층 고용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효과가 높았다.

사회복지분야는 1인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시장가격수준으로 가격상승이 어려워져 매출액 대비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원가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지속적인 자원연계와 지역사회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1> 사회복지 분야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 구분                         | 내용                                                                                                                   |
|----------------------------|----------------------------------------------------------------------------------------------------------------------|
| 평균근로자중 취약계층 비율             | 2009년 12월 기준 47.6%. 전체 평균 58%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            | 2009년 12월 기준 97.0%, 전체 평균 97%                                                                                        |
| 취업계수                       | 일반기업 취업계수 28.8명에 비해 높은 75.7명. 보육 151.4명, 교육 89.4명에 비해 낮음.                                                            |
| 영업활동 수입과 지속가능성             | 총사업비중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58.9%, 정부/지자체 지원금 33.9%로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지원의존율. 전체 사회적 기업의 총사업비중 매출액 비중은 69.2%, 정부/지자체 지원금비중은 24.7%. |
| 1인당 영업활동 수입과 영업외 활동 수입     | 영업활동수입 13.2백만원, 정부지원금 7.6백만원                                                                                         |
| 총원가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인건비포함) 비중 | 총원가중 일반관리비 80.3%, 인건비 83.1%. 전체 평균 52.9%, 일반기업 10%내외                                                                 |

\*자료 : 객선회(2012)

둘째, 서울형 사회적기업 성과 및 정책방향(201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업종은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업이익과 영업외 이익금의 규모를 보면 영업활동 수익보다 정부 지원금 등 영업외 수익이 많았다.

**\*2013 춘계 학술대회\***

한편,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성과는 높지만, 경제적 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좋은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2〉 사회복지 분야 서울형 사회적기업 평가결과(21개, 전체 20%)

| 구분                   | 내용                                                          |
|----------------------|-------------------------------------------------------------|
| 유급근로자수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 일반근로자 210명, 취약계층 근로자 271명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56.3%                 |
| 서비스 수혜자수 및 취약계층 수혜비율 | 일반수혜자 3,564명, 취약계층 수혜자 28,260명으로 취약계층 수혜비율 88.8%            |
| 매출액 및 이익현황           | 매출액 30,616,149천원, 매출원가 4,528,613천원, 당기순이익 135,332천원         |
| 평균 매출액 및 이익현황        | 매출액 1,457,912천원, 매출원가 215,648천원, 당기순이익 6,444천원              |
| 영업활동 수입과 영업외 활동 수입   | 영업활동 수입(매출액) 30,616,149천원, 영업외 활동수입(정부/지자체 지원금) 3,047,716천원 |

\*자료 : 조달호·김범식·최봉(2012)

### 3. 지역중심의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자원연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자본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들은 다른 분야보다 경제적 가치 창출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련된 기금은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지원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정 할당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다양한 сек터들과 협력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재단법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기금은 사회적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되 일정 매출에 따라 자동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금이 적절히 투자되고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팀도 만들어야 한다. 투자자들의 제안을 심사하고 투자된 기금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체설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지역내 기업, 민간단체 등의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전략적으로 투자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과 다른 сек터간의 자원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경제)과 2%나눔 캠페인’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관은 관련 사회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리스트를 파악하고 홍보 및 설명자료를 도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

업들과 공유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많다. 사회적기업들은 이 공간을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자원봉사단 등을 조직하여 연계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4. 충남도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모델**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자원연계는 운영주체의 설립 또는 선정,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사업단 운영, 필요자원 연계로 운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복지재단과 같은 운영주체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사업단을 공모해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지역내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관리 및 개선서비스,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아동보육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및 이동수단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아동서비스,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충남도 고령자형 건강마을 가꾸기, 등급외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해당 영역에 대해서 수요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사업단을 공모해 선정하고 매년 필요한 운영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외 소요재원은 일반이용자로 부터의 이용료수입, 후원금, 기초자치단체 지원, 지역기업 후원 등을 활용하여 조달하는 NGO형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1개씩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수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은 물론 시장, NGO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자원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고용부 등)는 기존부터 하고 있는 인건비·사업개발비와 같은 재정지원, 우선구매(위탁) 지원, 경영컨설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충남도는 기존 복지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소요 자금을 지원하고, 우선구매(위탁)을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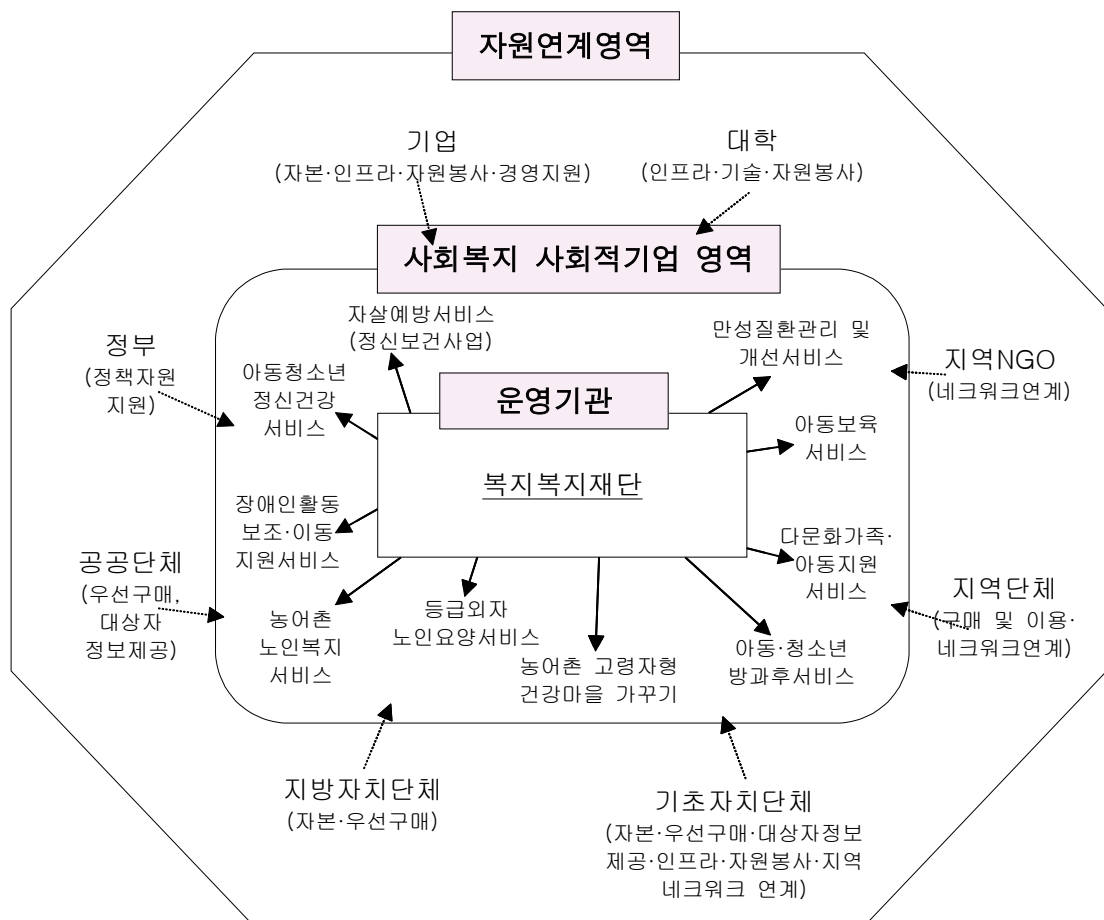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도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우선구매 지원해야 하는데,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을 가진 주체들간의 지역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기업의 경우도 사회공헌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소

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반 근로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전문 근로자를 활용한 경영지원(컨설팅),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공간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도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인프라는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력을 대학구성원이 가진 기술력을 통해 지원하고, 대학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NGO의 경우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내 다양한 단체들도 네트워크 연계에 동참 또는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구매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원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림1>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운영기관 및 자원연계 체계



## 5.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운영모델 예시

공공에서 제공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사례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예시

| 구분        | 취약지역 고령자형 건강서비스제공(건강마을) 사회적기업                                                                                                                                                                                            | 노인·장애인 이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
|-----------|--------------------------------------------------------------------------------------------------------------------------------------------------------------------------------------------------------------------------|-------------------------------------------------------------------------------------------------------------------------------------------------------------------------------------------------------------------------------------------------------------------------------------------------|-----------------------------------------------------------------------------------------------------------------------------------------------------------------------------------------------------------------------------------------------------|
| 주요 사업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에 의료생협 형태로 의료서비스(한방, 치과, 정형외과 등 노인성질환 관련)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지역 노인·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콜택시 등)</li> <li>-취약지역 노인·장애인요양 및 복지서비스 제공(가사서비스, 긴급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li> <li>-취약지역 노인·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li> <li>-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li> <li>-노인·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li> <li>-취약지역 노인생산물(농산물 등) 구매 및 판매대행(유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 상담치료서비스 제공</li> <li>-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검사, 인터넷중독 검사 및 중독치료</li> <li>-자존감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 등 각종 교육사업</li> <li>-아동청소년 정서 관련된 문화기행(여행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li> <li>-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관련 연계사업 수행</li> </ul>  |
| 제1인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관련 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 운전인력, 간호사 등 의료관련 인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문화기획자 등 관련 전문가</li> </ul>                                                                                                                                                                     |
| 운영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금 혹은 충남도와 기초단체 자체예산으로 운영비 지원</li> <li>*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일정비율(50%) 혹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 등으로 조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금 혹은 충남도와 기초단체 자체예산으로 운영비 지원</li> <li>*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일정비율(50%) 혹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 등으로 조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금 혹은 충남도와 기초단체 자체예산으로 운영비 지원</li> <li>*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일정비율(50%) 혹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 등으로 조달</li> </ul>                                                                                          |
| 경제적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지역 고령자와 지역 주민들의 회원회비 수입</li> <li>-건강보험공단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수입</li> <li>-기타 한방, 치과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 제공 수입</li> <li>-대체의학 및 건강식품 등 제공수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계층 대상 이동서비스 제공비, 심부름 서비스 제공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비, 요양서비스 제공비 수입(가족·본인으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어르신들의 필요를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회원제 운영)</li> <li>*취약계층은 실비 또는 무료제공</li> <li>-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위탁수입</li> <li>-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련 복지서비스 사업 위탁수입</li> <li>-취약지역 노인생산물 유통수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계층 대상 검사비, 치료비, 교육비 등 수입</li> <li>*취약계층은 실비 또는 무료제공</li> <li>-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위탁수입</li> <li>-초·중·고교 강사파견 및 교육수입</li> <li>-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사업수입</li> <li>-아동청소년 정서 관련 문화기행 프로그램 운영수입</li> </ul> |
| 사회적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지역(계층)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특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지역(계층) 노인·장애인을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li> <li>-취약지역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정서발달 지원</li> <li>-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문제 감소</li> </ul>                                                                                                                                                    |
| 필요한 자원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li> <li>-지방자치단체 관련 보건서비스 사업 선정, 운영비 지원</li> <li>-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li> <li>-대학기업의 자원봉사 및 후원제공</li> <li>-지역내 다양한 단체의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연계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li> <li>-지방자치단체 관련 복지사업 우선 위탁(생산물 우선구매), 운영비지원</li> <li>-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의 관련 서비스 연계제공</li> <li>-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자원지원(무료진료, 방문진료 등)</li> <li>-대학기업의 자원봉사 및 후원제공</li> <li>-지역내 다양한 단체의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연계제공(문화공연, 의료진료, 법률, 상담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li> <li>-지방자치단체 관련 복지사업 우선 위탁, 운영비지원</li> <li>-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의 관련 서비스 연계제공</li> <li>-대학기업의 자원봉사 및 후원제공</li> <li>-지역내 다양한 단체의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연계제공(문화공연, 의료진료, 법률, 상담 등)</li> </ul>         |

## 토 론 문

#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사회적기업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 1. 사회적기업 성공의 세가지 기본요건

첫째, 사회문제를 연대와 협력의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열정을 지닌 사회적기업가  
둘째, 사회적기업에 호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는 정부  
셋째,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민네트워크

### 2.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사회적기업이 주는 시사점

- 시혜적 관계가 아닌 연대적 관계로의 전환
- 참가형 시스템에 기초한 민주적 운영원리
- 사회경제적 자립기반과 호혜적 그물망을 통한 자존감 회복
- 대중적 요법과 예방적 요법의 통합적 접근
- 협동적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 확대

### 3. 사회적기업정책의 변화방향

- 1) 단순 지원에서 제도생태계 조성으로 전환
  - 중소기업법 등 관계법령 정비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공공시장 개방 및 금융환경 조성
- 2)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접근
  -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연계 및 통합방안 구축
  -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기반 강화
- 3)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한 법인격 보완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법인격 보장
  - 사회적협동조합 법제화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4) 새로운 거버넌스 기반 조성

- 정부, 민간기업, NPO,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하는 다종다양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 네트워크 되는 것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의 핵심이라는 학습효과

**4.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과제**

-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지방정부, 지역사회복지주체, 사회적경제계, 시민사회가 공유할 것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경제 리더십 양성
-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섹터가 자원을 연계하고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경험의 축적이 중요
- 협력조직간 신뢰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원칙을 확대해 나갈 것
- 시민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역량을 연계하여 보다 강한 사업역량을 구축할 것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기획주제 발표 3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김 선 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 지역사회복지 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김 선 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 I. 들어가며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201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24개, 일반협동조합 919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개 등 총 94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sup>1)</sup>

세계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하고자 주민들이 만든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판매·제공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긴 하지만 활동 목적 자체가 주민 공통의 필요와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문제를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함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활용·개발하여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sup>2)</sup>”이라는 지역사회복지 정의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활동의 목적 자체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다. “협동조합의 역사는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의 역사<sup>3)</sup>”라는 말과도 통한다 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 주민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가치 지향(구체적인 미션의 해결)의 사업체로서 가치와 사업이라는 양 날개를 고루 갖추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가치와 사업의 양 날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 초기 단계부터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주민의 공통된 문제, 필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협동조합의 설립경향을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적 접근보다는 단순히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절차에만 매몰되고 있다. 이는 결국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주민의 생활 문제 해결 또는 예방’이라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복지와의 공통분모 역시 희석시키고 있다.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인가 및 신고 현황(2013년 4월 기준)

2) 박태영 교수,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의 협동조합에 관한 소고 1page, 2011년 8월 31일, 협동조합과 지역복지 갈거리사랑촌 20주년 기념세미나

3)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32page



## II. 협동조합의 본질과 설립절차에 대한 검토

### 1.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기본법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단순하다.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 모집 후 창립총회를 거쳐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협동조합 법인격 획득을 위한 행정절차일 뿐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아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공통의 문제, 필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의 첫 시작은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주민 삶에서 대두되는 공통의 문제, 필요,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선행돼야 주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예방한다는 지역사회복지의 궤와도 협동조합이 함께 할 수 있다.

다중 이해 관계자가 모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본질적으로는 이해 관계자의 공통의 문제, 필요, 욕구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시작은 주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욕구, 필요 등을 찾아내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공익(共益)과 공익(公益)을 발견하고 사람을 조직하는 게 협동조합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간병·가사 사업 역시 사업의 예시일 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미션(주민생활의 문제)을 찾아내고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이 구체적일수록, 주민의 열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협동조합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비조합원 이용금지 등과도 맞물리며 사업적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 2. 협동조합 성공을 위한 기초 작업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민의 공통된 문제 등을 찾아내 사람을 조직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조합을 구성할 주민과 함께 협동조합을 공부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협동조합은 모든 게 사람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성원이 협동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주민의 생활문제(공통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일이다. 주민 필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사업체 성격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반드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사업의 방식

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형태와 유형을 정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일반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유형을 소비자·생산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는 미션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수지분석도 해야 하고 초기 투자금 등도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규모나 1인 출자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자금조달 계획 등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모두 끝나야 제대로 된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절차 개시 이전의 단계를 얼마만큼 숙성시켰는가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고 그 시작은 주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 **Ⅲ.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에 담긴 함의**

#### **1.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4기<sup>4)</sup>**

1966년 11월 13일 원주신용협동조합 결성으로부터 시작한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고리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원주신용협동조합 결성하고 이후 영서 권역에 신협과 소비조합을 전파하고 교육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역에서 대중화 시킨 시기라 할 수 있다.

2기는 1기에 만들어진 신협과 소비조합이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붕괴와 함께 쇠락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명사상과 호혜성에 입각해 도농 직거래 형태의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을 만들어 낸 시기이다.

3기는 이와 같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 이어져 오던 협동조합이 97년 IMF로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2003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결성,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4기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생겨남에 따라,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 실질적인 연대의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기라 할 수 있다.

---

4) 2012년 12월 6일 협동조합지역네트워크협의회 사례 발표문에서 발췌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전개과정>

| 시기            | 유형               | 사회적 미션                                              |
|---------------|------------------|-----------------------------------------------------|
| 1965년 11월 13일 | 원주신용협동조합         | 살인적인 고리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                            |
| 1985년 5월 18일  |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극복하고 생명사상과 호혜(互惠)에 입각, 도농 상생의 질서 확립 |
| 2002년 11월 16일 |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원 | 조합원의 새로운 필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
| 2003년 6월 5일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 IMF 위기 후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설                      |
| 2009년 7월 17일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지향단체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

## 2. 주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미션

원주협동조합 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각 시기마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했던 정확한 사회적 미션이 있었다는 것이다.

1기는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했고 2기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과 농업, 농민의 붕괴를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 돌파하려했다. 한살림 운동 전인 73년부터 탄광지역에서 전개한 신용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운동 역시 저임금 고물가 구조에 시달리는 광산지역 노동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역사이다.

3기는 IMF라는 외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제일 과제로 선정, 지역사회의 체질을 협동조합 체질로 변화시키려 했고 4기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성됨에 따라 연대의 틀을 확장한 시기이다.

이렇듯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주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을 왜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 IV. 원주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미션<sup>5)</sup>

### 1. 갈거리협동조합

갈거리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갈거리사랑촌에

<sup>5)</sup>한국분권아카데미, 풀뿌리기업론(안동규, 김정옥, 이강익, 박범준, 원응호, 김선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편에서 발췌 및 수정

서 2004년 9월 20일 창립한 미인가 신용협동조합이다.

갈거리협동조합은 원주노숙인쉼터에서 노숙인의 통장관리를 해주면서 시작되었다. 노숙인의 특성 중의 하나가 하루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 그 날 다 써버리는 것이다. 재 활용품을 수거하거나 일일노동을 통해 몇 천원 혹은 몇 만원을 벌더라도 주로 음주로 돈을 다 써버리고 노숙을 하게 된다.

또한, 노숙인들 중에는 문맹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되거나 신용불량이어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몇 십 만원의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비싼 여인숙이나 여관을 이용하거나 돈이 떨어지면 노숙을 하게 된다. 더욱이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주민등록이 없으니 자연히 의료보험도 안 돼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우며 특히 목돈이 드는 입원치료나 치과보철 치료 등은 접근조차 힘들다.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서는 만성 노숙인의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인식하여 1998년 12월 설립 초기부터 쉼터 이용자들에게 개인이나 쉼터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통장을 만들어 주어 저축할 수 있게끔 하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관리해 주고 필요한 경우 대출도 해 주는 금융지원 사업을 해 왔다.

2004년 9월 이러한 금융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노숙인 센터 이용자에서 지역 빈곤층으로 확대하고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을 참여시키고 사업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갈거리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조합의 목적은 우선 노숙인이나 지역 저소득주민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필요한 자금 대출을 해주어 생활안정 및 자립에 도움을 주는데 있으며, 결국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자립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갈거리사랑촌 후원자들의 기금과 후원자가 임원이 되어 조합이 먼저 결성되었고, 차차 해가 바뀌면서 조합원 참여가 활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조합을 이용하는 빈곤층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구성되어가고 있는 복지형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노숙인을 포함한 지역 빈곤층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행·재정적 능력이 부족해 갈거리사랑촌 단체에서 먼저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 주민들과 먼저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이다.<sup>6)</sup>

갈거리협동조합은 미인가 신용협동조합이긴 하나 ‘협동조합의 원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기본법에는 금융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을 근거로 법인격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협동조합이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체가 아닌 공통의 욕구, 열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짚어보면 갈거리사랑촌에서는 오랫동안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숙인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노숙인 대부분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 아

6) 갈거리사랑촌 개원 20주년 기념 사회복지세미나 : 사회복지와 협동조합 사례 발표, 광병은

## \* 2013 춘계 학술대회 \*

무리 노동을 해 돈을 번다해도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가 갈거리협동조합 결성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했고 공통의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려는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9년 동안 잘 운영하며 성공모델이 됐다.

또한, 갈거리협동조합은 결성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예금과 대출사업을 이용하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고자 하는 지역 인사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예금과 대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갈거리협동조합의 2010년 기준으로 조합원 수는 249명이며 출자금과 예금액을 포함 188,021,088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총 93건에 129,120,000원의 대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용도는 월세보증금, 난방비, 병원비 등 다양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부실대출 건수가 7건(전체 대출액의 4.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갈거리협동조합에서 조차 악성채무를 남기게 되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박함과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갈거리사랑촌 광병은 원장은 “사회복지의 주목적이 빈곤을 해결해 인간다운 삶을 도와주는 데에 있다면, 협동조합은 협동을 통한 자립으로 빈곤해결과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서비스보다 자립하여 본인 스스로 빈곤을 극복해나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빈곤층에게 금융지원을 해주는 금융지원서비스도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이 유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미소금융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갈거리협동조합 같은 복지형협동조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sup>7)</sup>

## 2.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85년 6월 24일 창립했다.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해 1990년 2월 28일 원주한살림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원주한살림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은 7천100명이며, 1차 농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사업으로 39억4천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생협하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신협이 금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듯, 생협 역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다. 다만 신협은 금융사업을, 생협은 직거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 것이다.

한살림의 전신인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산업화로 인해 농민과 농촌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겠다는 뜻에서 시작됐다. 6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는 정책의 중심을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화의 주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기 시작했

7) 갈거리사랑촌 개원 20주년 기념 사회복지세미나 : 사회복지와 협동조합 사례 발표, 광병은

다. 또한, 인구급증에 따른 증산정책으로 농약과 비료를 과다사용과 이에 따른 농민의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부담 가중, 여기에 새마을 사업의 자부담 확대 등으로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만 갔다. 옳진 데 옳진 격으로 정부가 저곡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은 축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장일순 선생께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기면 농민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농업원리에 의거, 경제적 가치가 아닌 생태적 가치를 담아야 하고, 도시와 농촌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가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착안하게 된다. 이것이 도·농직거래 형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농민은 환경적 피해와 자부담을 줄이는 방식 즉,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짓고 도시 소비자는 이렇게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간 합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삶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은 단순히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활동이 아닌,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살림’은 ‘농산물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농민은 늘 불리하다.’는, 민중 삶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자, 좀 더 확대된 협동적인 공생의 질서를 일구고자 한 협동조합 운동의 확대·발전인 것이다.

### **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바로 협동조합 활성화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법인을 만드는 것과 그 법인이 가치를 잃지 않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해서 출발선이 뒤쳐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협동조합 진영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성, 협력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2003년 원주밝음신협과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등 지역의 8개 단

체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체질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꾸지 못하면 외부적인 금융위기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도태될 수 있다는 반성이 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협의회 결성 후 단체들은 로컬푸드 운동과 공동의 신문 발행 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돼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등장에 따라 2009년 협의회 명칭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변경했다. 현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농민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및 회원 수는 3만5천여 명, 종사자는 450여명이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최근인 2011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친 자체 심포지엄을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자구적인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

생태계 조성의 첫 번째 사업은 각 조직의 자립을 위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회원단체 간 협력을 통해 ‘연대의 시장’ 또는 ‘보호된 시장’을 형성, 각 회원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 단체 또는 각 단체 조합원 및 회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함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협동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려면 기댈 수 있는 금융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그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각 수준에 맞게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금융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단체 간 합의를 통해 잉여의 일부를 함께 적립하거나 단체 간 사업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각 단체의 잉여 중 일부를 자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체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셋째는 교육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일반 주민 역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정형화된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는 조합원 또는 회원, 일반 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펼치는 사업이다. 단체 간 연대에 있어 가장 핵심은 임직원 중심의 연대가 아닌 조합원 및 회원 참여의 활성화이다. 이래야만 협력 사업이나 기금조성 사업, 교육 사업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 각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인적·물적 서비스가 회원단체 조합원 및 회원에게 전달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주민에게도 네트워크의 기준과 가치, 사업 등을 알리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해 법인격을 획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들끼리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들끼리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분류된다. 또한, 생협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을 근거로 해 만들어진 협동조합과는 연합회 구성이 불가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과도 연합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려면 근거 법을 달라도 지향가치와 사업의 유사성을 갖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업을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합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설립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트워크 회원단체가 조합원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인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단체 간 출자를 통해 만든 2차 협동조합 법인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V. 나오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2013년 3월 29일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체적인 협업(協業)의 모델을 만들고,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협동조합을 협업(協業)의 모델 안으로 끌고 와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 전략적으로 주민 삶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개별 협동조합의 개별 미션으로 주민 삶의 총체적 분야에서 대두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레이들로 박사는 “신용협동조합만으로는 빈곤의 표면을 건드리는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한 종류의 협동조합에게 사회의 개혁과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얻고 경제·사회적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주려면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의 수단과 여러 영역의 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개별 협동조합의 개별 미션만으로는 ‘주민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문제를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함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활용·개발하여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다양한 노력”이라는 지역사회복지의 내용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하려면 주민 삶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건설, 주민 삶 자체가 협동조합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각 주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미션을 찾아내 함께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장일순 선생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을 통해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년 5월 31일(금)

---

토 론

우 영 균 (상지대 교수 / 산학협력단장)

최 명 진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토 론 문

#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우 영 균 (상지대 교수 / 산학협력단장)

## 1. 협동조합의 특징과 지역사회복지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협동조합은 자조, 자율, 민주주의, 평등, 공평, 연대를 그 기본적 가치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원칙으로서 자발적·개방적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 및 독립, 교육·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의 원칙 등 7개 원칙을 규범으로 하고 있다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1995). 이런 점에서 참여와 연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적합한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전통적인 협동조합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 2. 지역사회복지 주체로서의 협동조합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1)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주체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편익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에 폭넓은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협동조합 운영원칙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에서는 그동안 가장 실천의지가 미흡한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협은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사업도 경제, 신용, 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농촌 사회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업적 측면에 매몰되어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농촌사회의 공동화·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농협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2) 협동조합 사업의 다양화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영세 협동조합의 난립에 의한 부실의 우려도 제기된다. 그런

## \* 2013 춘계 학술대회 \*

점에서 협동조합의 신설에 의한 다양화와 함께 기존 협동조합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협동조합은 사업의 다양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또 필요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기농산물 중심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생협운동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제한적인 조직에서 출발하여 그나마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소득증가에 따라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데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기농산물은 생협의 전략품목으로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용으로 인해 농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기농산물의 취급 그 자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에서 생협의 목적 자체가 마치 생명사상의 보급이나 유기농산물의 판매에 있다고 오인되고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생협의 취급품목은 경제여건이나 소비자의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유기농산물 및 그 관련품목에만 치중해옴으로써 생협의 발전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외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협은 지역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사업영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3) 조직력 강화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활동을 통한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운영에의 참여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역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문화적 소모임의 개발 등에 의한 문화적 접근
- (2) 조합사업에 대한 조합원인력 활용에 의한 참여도의 제고
- (3) 지역문제·생활문제에 밀착된 신규 사업의 개발 (보육, 문화, 자동차, 환경 등)

### 4) 인적자원의 확대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운동체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 양자는 수레바퀴와 같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 주체로서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 및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풍부한 인적 자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전문 교육기관의 확대와 협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이중협동조합간(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체 구성

## 토 론 문

#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최 명 진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연리지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나무가 자리다툼이 아닌 가치를 섞어 공존을 선택하듯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 1.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이하 연리지) 탄생배경

1)아이디어는 자기문제로부터 시작된다....(절박성이 만들어낸 연리지)

- 유아기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를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졸업 후 일할 곳이 없는 현실.
-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직업과 삶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음

2)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에 도전장을 내걸다: 소셜벤처경연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장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가족과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연리지. 장애에 대한 편견도 깨뜨리고 일과 삶을 만들어 가고자함.(설립동의자를 모으다)

- 성인기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표: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시설의 대안은 무엇일까?

3)현실적 문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다.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게 하는 차량환경에 눈길을 돌리다.

4)합의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세차

5)소셜벤처경연대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사업을 구체화하다.

-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현실성 제고,
- 두레마을(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의 에어세차 회오리의 기술 연결

## 2.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2호, 전국8호, 대전1호의 사회적협동조합)

1)설립목적: 장애가족 자조와 협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개발 및 일자리 창출

**\* 2013 춘계 학술대회 \***

2)협동조합의 유형: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일과 삶, 일과 여가활동)

3)고용형태: 비장애1명, 발달장애인4명(오전/오후교대, 3인1조)

4)사업내용: 건강+나눔+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건강세차 회오리

5)걸어온 길:

2012.6: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도전'

소셜벤처경연대회 도전

2012.7: 소셜벤처경연대회 대전.충청권 입선

2012.8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

2012.9 소셜벤처경연 전국대회 참여 최종입선

2012.10: 발기인모집

2012.11:연리지 발기인대회

(주)두레마을 초청 사업설명회 및 시연

2012.11: 협동조합창업학교수료(2012.10~11)

2013.1.4 연리지 창립총회공고

2013.1.18: 직원조합원모집

2013.1.29: 창립총회(설립동의자119명)

2013.2.7: 인가신청서 제출(인가부처 고용노동부)

2013.2.27~28: 직원조합원 수련회(1박2일)

2013.2.28: 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방문

2013.3.4: 직원조합원 교육훈련(약 한달간)

2013.3.19: 고용노동부설립인가

2013.4.8 개미스폰서 (5.11까지 아름다운가게)모금

2013.4.23: 시청과의 업무 협약식 및 출범식

2013.4.24: 시청에서 출장세차 시작

2013.5.13: 다음 아고라 희망해(서명완료 후 현재 심사중)

6)연리지 세차사업

- 사업개요: '가족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건강세차'

- 가족건강을 위협하는 차량세균

어린이 노인에게 더욱 취약한 차량환경,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는 차, 여름철 비오는 날에 더욱 번식하는 세균을 가진 차량에 대한 친환경 건강세차

- 세차대상: 경험미숙,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세차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세차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층. 맞벌이부부, 사회연대의식을 통한 수요확보

- 건강세차: 송풍구 시트 밑등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살균, 탈취등의 건강한 차량환경 조성

- 친환경세차: 물 반 컵만으로 가능한 초음파 에어세차 회오리. 오폐수가 없는 친환경 미래산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실천 사례 \***

업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강점화한 전략: 집착을 정성으로, 반복을 꾸준함으로. 작업공정 분산으로 맞춤형 공정, 짧은 집중시간을 이용한 세차, 초극세사와 회오리건으로 하는 안전한 작업,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협동작업 초음파 에어세차 회오리(친환경 건강 회오리세차)
- 영업전략: 공공기관 입점 추진, 단체출장세차(학교, 관공서등)

### 3. 연리지의 현재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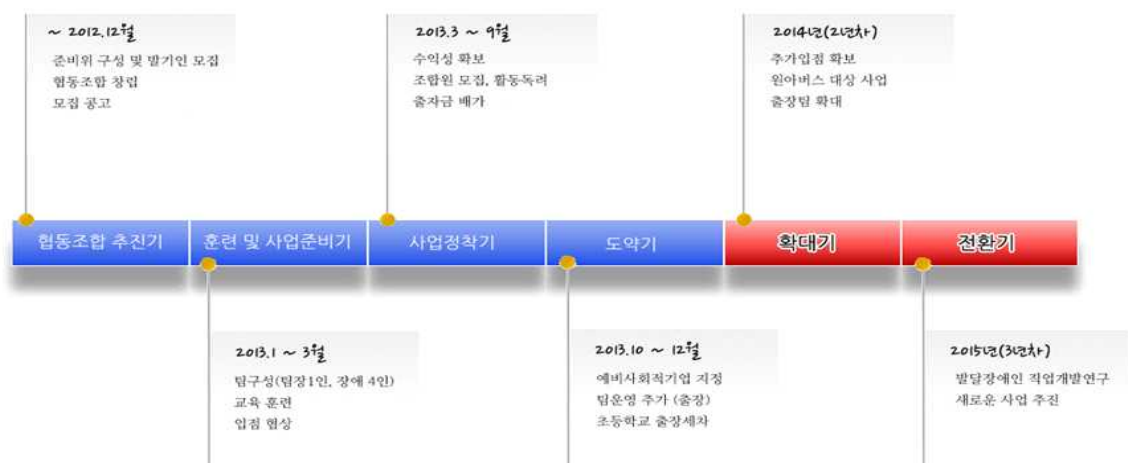
1)현재: 시청에서 출장세차형식으로 세차를 하고 있음. 인근지역 홍보

2)현실적인 어려움

- 작업장형태( 간이샵의 형태에서 출장세차의 형태로 바뀜)
- 세차의 특성(물세차, 스팀세차, 자동세차와의 차별성)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수익성
- 홍보마케팅,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절감
-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시장 재조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 사업계획수정의 필요성

3) 연리지의 비전

- <시사기획 창>의 협동조합 성공조건: 자금, 유통, 연대
- 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한 2의 도약 기대
- 2차사업팀의 구성(학교, 공기업 등 단체출장세차-업무협약 체결)







## 자유주제

### ◆ 제1분과 ◆

#### ➤ 발표 1.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자 : 정성기(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근홍(강남대 교수)

토론자 :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연구원)

#### ➤ 발표 2. 지역사회재활모형으로서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발표자 : 이달엽(대구대 교수) · 박미량(대구대 대학원 석사)

토론자 : 임종호(한라대 교수)

#### ➤ 발표 3. 자활사업 참여자의 협동조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o’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표자 : 황상섭(성공회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자 : 심상용(상지대 교수)

### ◆ 제2분과 ◆

#### ➤ 발표 1. 인정과 보상이 노인자원봉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금룡(상명대 교수), 박상욱(상명대 강사), 유은경(상명대 강사)

토론자 : 김승용(백석대 교수)

#### ➤ 발표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발표자 : 김재녀(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 이형하(광주여대 교수)

토론자 : 채현탁(대구사이버대 교수)



◆ 제 1분과 ◆

자유주제논문발표 1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 성 기 (부천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 근 홍 (강남대 교수)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1세기의 복지국가 위기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고용문제 해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실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과요인은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는 일자리 복지(work-fare)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재정립, 기존의 사회적 기업에 대가치에 대한 이론적·탐색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기업의 불명확한 정의를 재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영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과의 공통점과 차이,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탐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탐색은 주로 문헌과 선행 연구 논문들을 종합,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3. 주요 결과

지역복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해결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강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과 복지가 연계, 통합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제기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자원개발 및 동원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촉진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특성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은 복지국가의 위기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고용문제 해결,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케어서비스 욕구, 도시재생정책,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며, 낙후된 지역사회의 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복원, 재생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발전의 기준이 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성과측정이 전통적인 재무지표보다 고객관계,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조직원의 학습능력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성과 측정 능력이 좌우하는 지식경영 시대에 맞는 전략적 평가시스템 발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책임의 성과측정은 미흡한 실정이고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또한 학술적 논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양적, 질적 요인들을 찾아 이를 지표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요인을 취약계층의 고용의 양과 질,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과 해결정도를 성과요인으로 하였다. 또한 경제적 가치의 요인은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매출액, 이익률, 재무구조, 자립률, 고객만족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 시장, 시민사회의 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금융자본이나 사회적 기업가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시스템 구축, 상호간의 제품개발과 생산, 홍보 · 판매 · 시장, 인력 · 교육, 재무 · 자금 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결 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적 접근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인은 첫째,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에 대한 실현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취약계층에게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는지, 또는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이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정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측정도구로 제시되는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을 통한 접근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 지속적 영업이익 증가, 지속적 수익목표 달성, 재정 자립도,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단지 수익률 제고라는 측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외부자원의 활용정도, 수익률 제고 등을 균형있게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협력네트워크는 지역사회로부터 자원을 조달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시장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양성,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시장(제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제도(정부와 대기업 사회적 경제 정책),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우수한 사회적 경제의 선택과 자원 집중, 공공 및 새로운 시장 개발, 사회적 기업의 시장 개척 등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자유주제논문발표 2

### 지역사회재활모형으로서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이 달 엽 (대구대 교수)

박 미 랑 (대구대 대학원 석사)

#### 1. 도 입

계층 간의 빈부 격차, 고용불안과 같은 실업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인 취약 계층에 대한 해결책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고 그에 대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다. 실업과 사회적 소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로 Borzaga & Satuauri(1998)는 “사적 부문의 법적 형태 및 관리 운영 모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지위와 조직적 형태를 띠고 가치재(merit goods)나 집합재(collective goods)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황정은, 정무성, 2011). 이러한 공익을 우선시하는 목표를 둔 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은 소외된 계층을 취업 시키고 노동시장에 잘 통합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립성을 스스로 갖고 유지시키기 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들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취약계층들 중 특히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의 증가로 인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시급한 사회적 문제이다. 일정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일과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잠재성과 능력을 임금을 받는 활동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다. 이로써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들도 인간다운 삶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근로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취약계층의 생산적인 근로 활동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사회적인 빈부격차, 느린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거시적인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 계층의 훈련과 자연스러운 노동시장 통합, 신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은 외곽 지역과 같이 경제적으로 뒤쳐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역동적인 해결책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 상품들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한 특징이 있다. 사회적 기업들의 창업 숫자에 비해 유지율은 낮은 편이다. 이로부터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예를 살펴보면 그러한 안정 궤도에 들어선다면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들의 확대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는 기업을 장애인과 같은 전문

적인 인력을 중심으로 키운다면 장애인 복지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의미를 더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 재정 투입 일자리 창출 모형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약 500여개가 인증되어 있다 (김덕영, 2011).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은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의 경우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자립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직업재활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시급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전문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크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동시에 가지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현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개념들과 운영방식에서 비슷하거나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와 특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욕구들에 의해 좀 더 전문적인 고용, 환경이 필요하기에 직업재활은 성공적인 장애인 전문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양성하는데 참고를 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사회적기업의 넓은 사회적 의미를 더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을 더한 장애인 전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들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의식과 직업을 갖게 되는 변화는 장애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고 사회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와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전문 사회적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그런 일자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 직업재활 시설들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회 문제들이 점점 다양해지며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 정부, 국민,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 양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이다. 기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협조하여 만들 수 있는 장애인 전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 2.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배경

사회적 기업은 지배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에 기반을 두고 그 국가와 지역의 맥락적 상황에 맞게 개발, 문화와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 왔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맞는 고유한 모델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사회적 기업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국가주도형인 만큼 변화도 비교적 빠르다고 한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은 501개 정도이고 (2010년 12월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인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개의 나라들의 사회적 기업 모델과 배경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발견하기를 일곱 개 지역 및 국가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은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거나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사회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회에서 시작된 역사적 배



경은 공통적으로 사회가 침체되고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사회적 기업이 시작 되었다 (Kerlin, 2010).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시작 역시 1990년대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빈곤층, 고령화, 실업문제와 함께 고용이 정체된 경제성장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사회적인 문제의 공동의 목표는 사회안전망의 강화이며 역할분담을 전제로 인식 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생겨났다. 처음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지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부, 2007a; 박찬임, 김혜원, 2010).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지면서 2003년 7월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업유형들을 넓혀갔지만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의 의존도가 높고 단기적이며 저임금 일자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2008; 박찬임, 김혜원, 2010).

사회적 기업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지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기업연계형 모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2008년 11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5년 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육성방향을 통해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4단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노동부, 2008).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 복지로도 이어졌다. 2003년 6월 의무고용제 시행 10여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율의 증가에 비교했을 때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정 이후 의무고용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강운주 2010).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000개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 요청이 행정관청에 접수되었다 (한겨레, 2013.5.14 14면). 협동조합이 외국에서 대규모로 발전한 이후에도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와 이용액에 비례한 배당원칙을 통해 사업과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자조적인 노력으로 소셜메이트 숨이라는 노동자협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지적장애아동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연리지라고 하는 장애가족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3년 1월 29일에 설립되어 특수학교를 졸업한 두 명의 지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한겨레, 2013.5.14 13면). 이 협동조합은 1889만원의 자본금으로 지적장애 가족들이 직접 설립하였다.

### 3.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기업의 특징들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정의와 관련하여 이정주와 백학영(2010)은 “조직의 고유한 목적을 노동시장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에 기초한 장애인 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2010년 5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을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에는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중에서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였다 (강미라, 2012).

이정주(2004)는 취업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산적인 측면을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하는 방안으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형태를 노동시장을 향한 중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가 정해져있지 않은 이러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은 한국의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501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들중 52개로 추정되며(이정주, 백학영, 2010),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이전 형태는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을 통해 운영되던 기관이 35개소(67.3%)며 다음으로 표준사업장이 9개소(17.3%)이며, 자립작업장 1개소(2.1%)와 기타가 7개소(15.2%)이다. 사회적기업 이전 형태를 보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은 표준사업장, 직업재활훈련시설, 자립작업장이었던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사회적기업의 하나로서 인정된 조직이다. 인정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 표준사업장                                                                          | 직업재활시설                                                        | 사회적기업                                                                 |
|------|--------------------------------------------------------------------------------|---------------------------------------------------------------|-----------------------------------------------------------------------|
| 정의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노동시장의 통상임금 및 최저 임금에 기초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을 받은 기관 |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 장애인복지법 제 49조 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기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
| 지원수단 | 설치지원금<br>고용장려금<br>생산품 우선구매 요청                                                  | 설치, 운영 지원금<br>고용장려금<br>생산품 우선구매 강제                            | 경영지원, 시설설비지원<br>공공기관 우선구매                                             |

※2013 춘계학술대회※

|            |                                                            |                                                               |                                           |
|------------|------------------------------------------------------------|---------------------------------------------------------------|-------------------------------------------|
|            |                                                            | 연계고용 장애인고용 부<br>담금 감면                                         | 조세감면<br>사회보험료 지원                          |
| 지원근거       |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br>장애인 30%이상, 장애인<br>근로자 중 50% 이상 중<br>증장애인 | 근로작업시설 경우 장애<br>인이 70% 이상, 근로장<br>애인의 3/4에게 최저임<br>금 이상 지급 원칙 | <인증심사><br>조직형태, 사회적 목<br>적<br>이해관계자 참여구조  |
| 장애인고용      | 강제사항                                                       | 강제사항                                                          | 비강제                                       |
| 소유주        | 사업주 (창업자 2개소, 수<br>충영세사업자 1개소)                             | 사회복지법인<br>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br>법상 회사 또는 비영<br>리 민간단체, 생협 |
| 지원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건복지부/지자체                                                     | 고용노동부                                     |
| 의사결정방<br>식 | 이사회                                                        | 규정없음<br>(이사회 결정 및 운영위<br>원회 개최)                               | 이해당사자 참여                                  |

출처: 이정주, 백학영 (2010) 실태조사와 고용개발원 pp. 20-21의 내용 재구성

표 1에서와 같이 사회적 기업이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크게 다른 것은 노동 시장속에서 생산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지원 수단으로서 경영 지원이 들어가는 것, 경영 안에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구조는 이해당사자가 각자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한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강미라, 2012).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과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은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시스템과 특성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보면, 직업재활시설의 정의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노동시장의 통상임금 및 최저 임금에 기초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인증을 받은 기관” 로써 이들은 주 관리하는 곳이 다르고, 사회적기업과 직업재활 시설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전반적인 법정 취약계층을, 직업재활 시설은 취약계층 중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사회생활기술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점이 사회적 기업과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이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이익금을 사회 공헌 목적으로 환원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직업재활 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는 국가 지원 형태로 근로자에 대한 최저 인건비, 사업개발비, 경영개선지원 등을 전액지원하고 후자는 조건부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아닌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지원만 한다. 하지만 둘 다 모두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양자 모두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들을 돕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이 공동 해결 과제이다 (조성열, 김백수, 2011). 그리고 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기업

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재활개념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더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4. 장애인 전문의 사회적 기업의 성공 요인 분석

앞에서 살폈듯이, 아직 확실한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듯이,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 비해 역사와 체제가 제대로 잡힌 선진국들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양뿐만 아니라 높은 질의 사회적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 그 성공적인 요인들로는 ① 전략 요인, ② 기업가 정신요인, ③ 경영역량 요인, ④ 조직 요인, ⑤ 사업환경 요인 ⑥ 사회네트워크 요인이 있다 (조성열, 김백수 2011).

첫째, 전략 요인은 자사 자원의 분석과 경쟁법칙을 변경할 수 있는 전략개발이 요구되며 이것은 사전시장조사와 컨설팅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선정업종이 성장률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크며 경쟁강도가 낮은 시장 매력도 분석이 집중투자와 선별투자 적합이면 생존확률이 높고 시장 경쟁력 확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출발하며 제품개발 등 경쟁우위 확보와 진입타이밍을 중요시한다 (이광우, 2009).

둘째, 기업가정신 요인은 적극적인 기업가의 자세로 공익과 영리의 균형을 잘 잡는 마인드이다. 기업가 특성요인은 창업전 경험, 경영능력, 개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기업가정신을 의미한다. 경영혁신의 창조정신, 리더십의 도전정신, 위험요소를 극복하려는 신념과 개척정신 등을 내포한다. 더불어 비영리기업에 요구되는 헌신성과 소명감, 사회적기업가 정신, 지역사회 자원개발 의지, 사회공헌의 사업 균형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조화를 요구한다 (이광우, 2009).

셋째, 경영역량 요인은 경영자와 관리자를 포함하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경영성과에 미치는 충분한 지식, 경험과 기술, 능력과 판단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결정적 구조화 문제를 얼마나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과거경험은 현재의 경영상황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이광우, 2009).

넷째, 조직 요인은 경영자와의 파트너십은 공동체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강길원, 2004), 조직구성원의 공지와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맡겨진 권한과 책임에 의해 헌신적으로 훈련된 직원을 신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역량이 발휘된다 (이광우, 2009).

다섯째, 사업환경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취약 계층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토대로 출발해야하고 자립기반 조성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광우, 2009). 경제여건과 소비자의 패턴등은 복잡한 주변 환경 요소와 상호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여섯째, 사회네트워크 요인 다양한 계층의 기관과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관계개선은 물론 일정한 호의적 관계 유지가 기업성장의 기본적인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주요 근로자로 두는 것에 대해 생산성 한계의 문제를 지는 사업체라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회적기업과는 경

## \* 2013 춘계 학술대회 \*

영과 수익구조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는 조금 다른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 정부지원금과 모회사 지원금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사업체로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의한 우선 구매의 현실화를 위해 조달 제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장애인 생산품 조달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지적장애인과 같이 취업 취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고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증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해 향후 재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기고용과 저임금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된 장애인 사회적 기업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일반노동시장 진출에 관해서 다시 평가하는 재인증제도와 이룩한 성과에 따른 다양한 차등화된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강미라, 2012).

## 5. 결론

경제적 성장과 사회 복지적 성장을 함께 이룩하고자 만들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들에게도 생산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육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취약 계층들, 특히 많은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의 역량강화적인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직업재활의 중요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보이지만 이러한 유사한 면들은 직업재활시설이 이미 사회적 기업의 선례로 꼽힐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기업시설은 아직 모자란 추세이다.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실제적인 숫자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간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참여는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는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이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직업재활시설은 주 관리하는 곳이 다를 뿐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들을 돕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 과 ‘훈련’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간 단계적인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여전히 부실하다. 특히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은 큰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들은 충분히 훈련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위한 훈련 체계와 시스템들은 기존의 직업재활시설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취약계층을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장애인지역사회복지를 잔여적으로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은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전통이 매우 짧으며 단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인 통합과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증가는 점점 더더지고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그것의 지속성과 질적인 면들은 매우 뒤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취약 계층의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데,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구조나 규모를 제대로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들을 통해 획득되는 정보, 자원과 같은 사회적 자본들은 제도로 장기화하는데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가지는 사회적인 네트워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전국에 산재한 독립생활센터들에 대해 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이들이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장애인 전담 기구를 두어야 하는데, 지원 제도에 있어서 민간의 사회서비스 진입효과는 기대된 것만큼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사회적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과 같은 기존의 영역들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들을 보완하면서 직업재활 시설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보조를 받는 500여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있고 이들에 대해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길원 (2004).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라 (2012). 한국인 사회적 기업 정책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2), 1-25.
- 강윤주 (201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 운영현황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4), 1-23.
- 김덕영 (2011). 사회적 기업 인증 후 분리 독립에 대한 연구: 늘푸르미, (주)웰푸드, 대구경북지역 먹거리연대를 중심으로, 대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노동부 (2007a). **사회적기업제도에 대한 이해**. 노동부.
- 노동부 (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노동부.
- 박찬임, 김혜원 (2010). **사회적기업 실태와 발전방향: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한국노동연구원.
- 이광우 (2009).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벤처중소 기업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정주 (2004). 제3섹터(The Third Sector)형 장애인중심기업(표준사업장)에 관한 논의. **장애인 고용**, 51, 32-48.
- 이정주, 백학영 (2010).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조성열, 김백수 (2011).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21(2), 29-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장애인 고용분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황정은, 정무성 (2011). 사회적 기업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1(2), 247-271.
- Borzage, C. & Santuari, A. (1998).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Kerlin, J., A. (2010). 사회적 기업 모델과 배경의 비교, **사회적기업연구** 3(2), 5-1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자유주제논문발표 3

## 자활사업 참여자의 협동조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황 상 섭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강북지역자활센터)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기업 성과의 중요한 요인으로 직원참여와 직원소유를 인식하면서 우리사주제도, TQM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경영상의 권한을 완전히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직원들이 기업을 소유하여 그들의 직무에 대해 자율성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창출하고 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경제적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사이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이상과 현실에서 실천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Kasmir(1996)는 몬드라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조합원이 수행할 직무를 위해 임시직 근로자들이 자주 고용되고 있다는 점, 조합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 타 공장으로 전근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계급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모두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며, 소유권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기업과 동일시를 경험한다."는 몬드라곤의 신화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사한 규모의 민간기업의 노동자보다도 더 수동적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현장 근로자들이 얼마나 그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제로 근무환경 속에서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가지는 경험과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최근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자활,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과정을 모두 경험하였으며 최근 23년간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



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인터뷰 자료 수집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행되었고,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통해 한명, 또는 두 명을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평균 면담시간은 약 2시간이며, 모든 대화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다. 또한 자료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1박2일 워크숍, 도우누리 사업부 직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관찰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o’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현재 ‘주인으로 성장하기’위해 노력중이다.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조직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 운영진에서 회사의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좌절감’과 ‘운영진과의 차이를 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취약계층인 조합원들은 교육수준도 낮고 회사의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다. 회계자료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조합원도 많지 않다. 경영진에서 말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리 있게 반박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불만은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경영진들은 보다 자세히, 끈기 있게 교육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현실에서 주인으로서 가지는 통제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영진이나 외부에서는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를 협동조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인지 의문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조합원들이 조직 안에서 계급차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운영진과 일반 조합원들간에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참여범위에 대한 차이이다. 운영진들은 자신들이 경영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일이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합원들은 경영에 더 깊은 참여를 원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상의 차이이다. ‘o’을 만들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소수 경영진의 의지이다. 소수의 리더들이 협동조합의 이상을 가지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은 그 방향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면서 왜 굳이 협동조합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환시 조합원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데,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조합원은 없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도를 불순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로는, 직업에 대한 운영진의 인식차이다. 경영진들은 ‘나는 능력이 있으나 여기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현장은 단순히 취약계층이 일하고 직업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참여자들도 자신들의 능력과 사명감을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넷째로는, 조합원으로서의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차이이다. 조합원들은 경영진들이 같은 조합원으로서 조직에 참여하기보다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합원회의에는 잘 참여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업무만 하는 모습이 불만이다.

이처럼 조합원이 좌절과 운영진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는 순치이다. 이는 경영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조합원 회의는 형식적으로 되고 경영진의 독단의 수단이 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 대표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들이 근로자들을 대표하기 보다는 운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과거 자활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주인의식을 인식하고 자기효능감을 획득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부족한 역량과 열악한 환경을 인식한 조합원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과 협동조합의 의미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참여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주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동료들과 함께 부족한 역량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내적인 성취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상호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성장도 포함한다.

이러한 차이에는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가 강한 조합원은 조직에서 더 많이 배워서 현장에서도 전문가로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조합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위와 같은 욕구가 약한 조합원은 주변 동료나 경영진의 부정적인 반응을 걱정하여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으로서의 역할과 자활참여자로서의 역할 간에 갈등’은 조합원 스스로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여 주체적인 주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여전히 자활사업 참여자로서 보호받고 조직에서 혜택을 받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자신은 단지 자활사업 참여자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일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도 스스로 쟁취하기 보다는 경영진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조합원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찍힐까’와 두려워서 어떤 발언을 하기 힘들어 진다. 어떤 행사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조합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활사업 참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해야지’하는 경향일 수도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기업의 효율성과 경제 민주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노동 형태에 대한 연구 역시 자본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비해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활기업들이 올바른 협동조합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제 2분과 ◆

자유주제논문발표 1

인정과 보상이 노인자원봉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금 룡 (상명대 교수)

박 상 욱 (상명대 강사)

유 은 경 (상명대 강사)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봉사활동만족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인정과 보상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고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으며,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참여노인 각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9월 한 달 동안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15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분석에 활용될 수 없는 10부를 제외한 142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SPSS 17.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주요 결과

인정·보상이 봉사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보상의 유형 중 정서적 인정·보상이 봉사활동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인정·보상을 많이 제공할수록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정·보상의 유형 중 기회제공 인정·보상이 자기주도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기회제공 인정·보상이 많을수록 노인자원봉사자의 자기주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도성 역시 봉사활동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데, 노인자원봉사자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봉사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과 봉사활동만족도 간에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인정·보상과 봉사활동만족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 론

본 연구는 인정과 보상이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는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노인자원봉사활동에서 인정과 보상의 영향력이나 봉사활동만족도의 영향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인정과 보상이 자기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자기주도성을 향상시켜 봉사활동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인정·보상과 봉사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 운영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이 중 봉사활동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서적 인정·보상이었다. 정서적 인정·보상이란 감사편지, 카드, 생일축하, 친절한 태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이고 일상적인 인정과 보상을 의미하는데, 봉사활동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인정·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회제공 인정·보상은 자기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회제공 인정·보상에는 교육 및 훈련이나 국내·외 행사 참여, 새로운 업무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기회제공 인정·보상은 봉사활동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지만, 자기주도성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봉사활동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봉사활동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제공 인정·보상 아이টে을 개발하여 봉사자의 자기주도

**\*2013 춘계 학술대회\***

성을 높이는 한편,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더욱 진정성 있는 정서적 인정·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자유주제논문발표 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김 재 녀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이 형 하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 6명을 연구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정착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심적 변화와 갈등의 크기를 지역적 환경요인과 연결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개개의 환경적 특성을 구별해 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처하는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법에 따라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위한 인터뷰를 통한 녹음과 이를 데이터화하는 필사과정을 거쳤다. 평균 인터뷰 시간은 3~4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중간에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였다.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 등 추가 자료 요청은 일정기간을 두어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텍스트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표정이나 음정의 높이 등 참여자가 표현하려는 감정적 의도를 괄호로 표시하여 참여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식 표현, 사투리 등 참여자가 실제로 발언하는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내용의 객관화를 유도하였다.

### 3. 주요 결과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로 20대 3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이다. 이중 결혼한 사람은 4명, 미혼은 2명이었고 출신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4명, 대학교 2명이었고, 재북시 직업별로는 군인 1명, 해설사 1명, 사무직 1명, 학생 3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에 적응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은 수많은 힘든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 순차적 방식에 따라 받은 영향의 범위를 분류하였다. 먼저 북한에서의 기본생활을 밝혀내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이후의 힘든 경험과 고난의 기간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체제적응에 대한 준비 없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적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관·사회적응 가치관 등에 따라 적응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범주의 분류는 개념 대 개념 비교를 통해 세부 속성을 이끌어 냈으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범주나 개념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하였다. 속성을 정의하기까지 자료를 계속 반복하여 재검토한 뒤 더 이상의 통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주제는 힘겨운 생활 견뎌내기,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기, 중국 생활 유지하기, 극한의 고문 극복하기, 직업으로 살아가기, 인맥확보의 힘든 삶 등이었으며 이들 주제를 통합한 결과 북한의 삶과 안정을 위한 노력, 북한이탈과 고난 극복, 정착을 위한 자립과 인맥 확대 등 대주제로 분류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 북한가족 끌여오기, 직장생활 유지하기, 사회연계망 찾기, 정서적 안정화 노력과 친한 친구 만들기, 하나센터 지원받기로 세분화되었고 이들 주제는 대주제로 가족구성과 행복 추구, 대인관계 확대를 통한 심리적 안정, 경제적 기반확대 등 범주화하였다(<표 1>, <표 2> 참조).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정

| 대분류              | 중분류          | 인터뷰 내용                                                                                                                                                  |
|------------------|--------------|---------------------------------------------------------------------------------------------------------------------------------------------------------|
| 북한의 삶과 안정을 위한 노력 | 힘겨운 생활 견뎌내기  | 감자 아니면 강낭밥(옥수수)먹으면 잘 사는 집이지, 소나무 껍데기 가성 소다라고 알아요? 가성 소다를 넣어서 세 번, 네 번 거기에다 우려내야 소나무 껍질이 나근나근해져요. 빨래 망치로 계속 두들겨야해. 가루 될 정도로 시뻘건 물이 안날정도로... <참여자 2번>     |
|                  |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기 | 오자마자 ○○이공대 너무 좋아서 학원가로 간다고 일단 직업 훈련원에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실태를 보고 거기서 내 머리가 되겠나! 아직도 녹슬지 않았더라구 할 수는 있겠다. 근데 남한은 앞으로 전망을 생각해야 하는 나라더라구. <참여자 1번>              |
| 북한 이탈과 고난        | 중국 생활 유지하기   | 그러니까 저쪽에서 약간 경찰복 비슷한 것만 보여도 뻑뻑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복도에서 뚝뚝 뚝 구둣발소리 나잖아요. 날 잡으로 오는건가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후진모리 옷 입고 아빠들은 밧줄을 베고 살았어요. 배란다에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참여자 4번> |
|                  |              | 에,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는 진짜 그 위험한 곳을 진짜 다녔거든요. 그게 공사장 이어서                                                                                                   |

|                  |             |                                                                                                                                                                                                |
|------------------|-------------|------------------------------------------------------------------------------------------------------------------------------------------------------------------------------------------------|
| 극복               |             |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저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한 겨울에 막 속옷 바람에 자다가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속옷 바람에 뒤통수 동상 걸리고... <참여자 3번>                                                                                                        |
|                  | 극한의 고문 극복하기 | 고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이 때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손톱 여기다 징을 박는 거예요. 철심... 암튼 비둘기 고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배란다가 밑에 다 막혔잖아요 거기다 딱 살은 채로 엮어 메요. 몽둥이 같은 걸로 사이애다가 끼워요 돌려요... 공중에서 사람을 까꾸로 달아놓고 밑에선 불을 피우고... <참여자 4번>            |
|                  |             | 눈 뻘히 뜨고 묶인 상태에서 진짜 정신이 말짱해 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 가지고 며칠 만에 의식을 차릴 정도로 피바다 될 정도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구타에 손가락 하나 까닥해도 고문이 들어오니... 신체는 만신창이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는... 어쨌든 그 고문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참여자 2번>                 |
| 정착을 위한 자립과 인맥 확대 | 직업으로 살아가기   | 아니 버스 탈 줄도 모르는데 취업이라니 취업이라는데 대한민국 사람들과 부딪히는데 일단 취업부터 들어가면 그 사장님 한테 완전히 머슴처럼 따라줘야 되는데... 취업이라는건 막 대부분 식당 취업, 전기기사 취업뿐인데 <참여자 2번>                                                                |
|                  |             | 알바는 많이 했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죠. 술집, 카페, 호프집, 택배회사, 배달, 치킨집, 진짜 많이 했어요. 알바를 오토바이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서 그때 지금보다 부유하게 살았는데... <참여자 6>                                                                           |
|                  | 인맥확보의 힘든 삶  |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들을 소리 있고 이해할 소리가 있고 어느거는 이해도 못하고 무슨 소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말은 해야겠는데 말이가 혀가 잘 안돌아 가서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음에 대답은 확실히 나가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선의가 서지가 않으니깐은 이렇게 자꾸 말을 안하게 되지. <참여자 5번> |

<표 2> 북한이탈주민 적응 유형

| 대분류                | 중분류                  | 인터뷰 내용                                                                                                                                                                       |
|--------------------|----------------------|------------------------------------------------------------------------------------------------------------------------------------------------------------------------------|
| 가족 구성과 행복 추구       |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기        | 저 여자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예, 나와서 같이 학원에서 만났어요. 이제 형사님이 소개시켜 줬어요. (하하하) 아 3년 전에 저 미국 2년 갔다 오는 동안 꼬박 기다렸어요. 저는 솔직히... 뭐 남자가 있지 않았을까! 아 이런 의문감이 좀 있었는데 2년 동안 진짜 나뿐만 기다렸드라고요. <참여자 3번> |
|                    | 북한가족 끌어오기            | 동생가족을 데려 왔어요. 딸이 ○명 중에서 내가 만이고 막내 동생 가족이 왔어요. 국방의무 담당 하는데... 개는 완전 북한에서 알면 총살 받아야. 그 집도 가족은 다 왔어 우리도 가족은 다 왔어.. 돈 매기면 되잖아 돈 매겨서 내 왔어요. <참여자 2번>                              |
| 대인관계 확대를 통한 심리적 안정 | 직장생활 유지하기            | 너 진짜 그 죽음도 불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제 죽었수다 하고 참고 견디고 3개월만 버텨봐. 내가 여기서 많이 도와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깐, 내가 정을 느끼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참여자 4번>                                 |
|                    | 사회연계망 찾기             | 근데 무조건 가라케 나는... 공부를 안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가서 사람들 만나라. 사람 만나다 보면 또 그게 넓어지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은 드물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대학교 생활이 재밌어요. <참여자 6번>                                                |
|                    | 정서적 안정화 노력과 친한친구 만들기 | 그때는 정신이 없을 때예요. 내 가족만 생각하면 머리 터질 때예요. 놀라시더라구요. 자원봉사 한다니까... 저는요 약기를 못하는데 제가 대신 노래를 할게요. 하겠다고 하니깐 그러세요. 제가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할게요. <참여자 4번>                                    |
| 경제적 기반 확대          | 하나센터 지원받기            | 하나센터가 첫째는 제일 먼저 위안이 되었고 그다음엔 일반 직업훈련학교, 대학교 교수님들 친구들 생기고, 우리끼리 말을 많이 하죠. 축제한단다, 기말고사다, 무슨 수능이다, 뭐다 할때는 할 수 없이 한국 분들과 대화하지! 북한사람은 어쨌든 정보가 다르니까. <참여자 2번>                      |
|                    |                      | 내가 돈은 있어요 마트 가서 모든 걸 살수는 있지만 어떻게 계산 할 줄도 몰라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할꺼 아니예요. 어느 뭘 보고 일자리를 골라야 될지 그런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지금 같으면 많이 좋아졌죠. 하나센터 생기고... <참여자 1번>                    |



#### **4. 결 론**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유형 분석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단순한 정신의학과 치료보다는 질병치료와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지원서비스를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구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내로 흡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모임을 위해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개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업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 하나센터간 정보공유 통로를 만들어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정보 확보가 중요하다.

다섯째, 초기단계에서 원활한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실무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초기 원만한 적응을 위해 최소 6개월 동안의 사회실무체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 메 모 ]

지역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조망

---

2013년 5월 30일 인쇄

2013년 5월 31일 발행

발 행 인 박태영

발 행 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TEL. 053-851-9968 · FAX. 053-851-9968)

홈페이지 : [www.kcommunity.or.kr](http://www.kcommunity.or.kr)

E-mail : [kcommunity@hanmail.net](mailto:kcommunity@hanmail.net)

---